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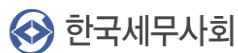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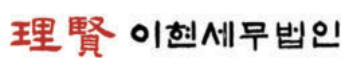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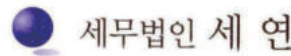
(사)한국조세법학회
제34차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

일시: 2023년 12월 2일 (토) 13:30 ~ 18:00

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2호

후원



주최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

모시는 글

한국조세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게 물들었던 가을 낙엽이 지고 어느 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내실 줄 압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길고 길었던 코로나 시국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았지만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와 물가 폭등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차분히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회는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소득세·법인세·지방세의 법해석과 세무행정에 관한 핵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세무행정 및 조세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차례로 첫 번째로 김정현 변호사께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두 번째로 서윤식 세무사께서 “특수 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기”, 세 번째로 임상빈 연구위원께서 “재산세 부담의 한계와 제한”, 마지막으로 이창규 교수께서 “인공지능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관한 주제 발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차례로 황인규 교수와 황현순 박사, 김정식 세무사와 정재연 교수, 윤석환 변호사와 김태호 박사, 임경인 세무사와 김선명 세무사께서 각각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주제별로 좌장을 맡아주시는 박종수 교수님, 이진오 교수님, 박정우 교수님, 김병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세법 전문가는 물론, 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토론에 적극 참여하시어 각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타당한 결론이 도출됨으로써 학술대회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각자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축사를 해주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또한 (사) 한국조세법학회 서희열 이사장님과 한국조세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일

(사)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김 두 형 올림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

일 시 : 2023년 12월 2일(토) 13:30 ~ 18:00

장 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세부일정

사회: 유호림((사)한국조세법학회 기획이사)

13:30~13:40 등 록

13:40~13:50 개 회 사 (김두형 (사)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13:50~14:00 축 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논문발표

〈제1주제〉

14:00~14:50 논문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발 표 자: 김정현(변호사, 감·장 법률사무소)

좌 장: 박종수(고려대학교 교수)

토 론 자: 황인규(강남대학교 교수)
황헌순(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14:50~15:40 논문제목: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기

발 표 자: 서윤식(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좌 장: 이전오(성균관대학교 교수)

토 론 자: 김정식(세무사, 김정식세무회계사무소)
정재연(강원대학교 교수)

15:40~15:50 Break Time

〈제3주제〉

15:50~16:40 논문제목: 보유세 부담 제한의 이중성 문제와 개선방안
발 표 자: 임상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좌 장: 박정우(연세대학교 교수)
토 론 자: 윤석환(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김태호(연구소장, 법무법인 텍스로)

〈제4주제〉

16:40~17:30 논문제목: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발 표 자: 이창규(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좌 장: 김병일((前) 강남대학교 교수)
토 론 자: 임경인(세무사, 국민은행)
김선명(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연구윤리교육

17:30~17:50 강 사: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7:50~18:00 폐 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

contents

- ☞ 제1주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1

발표자 김정현(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토론문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문 27

토론자 황인규(강남대학교 교수)

- 토론문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문 33

토론자 황헌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 제2주제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매매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대한 고찰 37

발표자 서윤식(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토론문①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매매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55

토론자 김정식(세무사, 김정식세무회계사무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

contents

토론문②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매매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59
토론자 정재연(강원대학교 교수)

㉠ 제3주제 재산세 부담의 한계와 제한 63
발표자 임상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문① “재산세 부담의 한계와 제한”에 대한 토론문 107
토론자 윤석환(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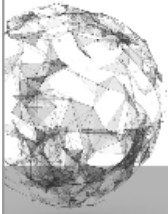
토론문② “재산세 부담의 한계와 제한”에 대한 토론문 111
토론자 김태호(연구소장, 법무법인 텍스로)

㉠ 제4주제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117
발표자 이창규(중앙대학교 연구교수)

토론문①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145
토론자 임경인(세무사, 국민은행)

토론문②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151
토론자 김선명(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부록 (사)한국조세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157



제1주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발표자 김정현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김정현¹

목차

- I. 들어가며
- II.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이중과세의 발생
 - 1. 이중과세의 부당성
 -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법적 성격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이중과세의 발생
 - 4. 명의신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효과
 - 5. 소결
- III. 조세평등주의 원칙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 1. 조세평등주의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와 조세평등주의
 - 3. 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과의 비교
 - 4.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과의 비교
 - 5. 소결
- IV. 결론

¹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변호사.

I. 들어가며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9항 및 제10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증여받은 자산 등에 대한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생략)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기주자의 상여·매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매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제10항에서는 다른 증여 또는 증여의제에 있어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때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이하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명의신탁 증여세의 기초가 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피고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다른 증여 또는 증여의제의 경우와 비교하여 명의신탁 증여세의 경우에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대우를 하게 되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규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밝힌다.

II.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이중과세의 발생

1. 이중과세의 부당성

가.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

원칙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를 두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의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헌법재판소 2008. 12. 16.자 2007헌바115 결정).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실질적 측면에서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세 원칙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11헌가8 결정 등 참조).

그리고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의 재분배, 외부불경제 교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11헌가8 결정).

나. 이중과세와 과잉금지원칙

조세법에서 이중과세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지만 그 의미나 범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현재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것은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국제적 이중과세’다.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 동일한 소득원천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법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을 전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56조에서 Gross-up을 통한 배당세액공제 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²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8조의 4은 자회사의 수입 배당액 중 일정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되고 다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일인이 동일한 소득원천에 대해 이중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법은 국외 과세분과 국내 과세분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을 전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57조 및 소득세법 제57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² 배당세액공제 제도란 주주의 배당소득에 귀속법인세(Gross-up 금액)를 가산한 것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배당소득에 가산한 귀속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이다.

두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증여세도 모두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동일한 납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는 본래 증여 받은 소득(Gift income,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소득과세(Income tax)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우리 세법은 (ㄱ) 법인 소득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법인의 증여소득에 대하여 따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ㄴ) 개인 소득의 경우에는 ①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② 증여소득(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 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별도로 과세하는 결과 동일한 원천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법은 아래와 같이, 상속세법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증여재산에 소득세 과세와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고(상속세법 제4조의2 제3항), 소득세법에서도 증여세 과세와의 조정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①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제10항, ② 소득세법 제97조의 2³, ③ 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⁴ 등).

³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⁴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판결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에서도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와의 조정 규정을 살펴보면,

- ① 소득세법 제97조의 위임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일 원재의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항 제1호에서는 증여의제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서 더하거나 빼도록 규정하여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②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서는 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① 납세지 관할 세무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기주자의 행위 또는 재산이 그 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주자의 행위 또는 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이)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등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되, 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 ③ 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에서는 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후술하듯이 헌법재판소의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하여(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0헌바28 결정), 동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⁵

위 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0헌바28 결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⁶

예를 들어, 증여자가 100원에 주식을 취득하여 주가가 1,500원일 때 특수관계자(수증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2년내에 타인에게 1,600원에 양도하는

⁵ 참고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⁶ 이는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양도소득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와 수증자의 양수자에 대한 양도행위를 부인하고, 증여자의 양수자에 대한 양도행위를 의제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하였다. 즉, 위 사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여자가 직접 양수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 1,500원(양도가액 1,600원과 취득가액 100원)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처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는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이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자체에 대하여는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로지 의제된 양도행위에 따른 과세만을 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의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된 증여에 기초한 과세와 의제된 양도에 기초한 과세를 서로 양립하게 함으로써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은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⁷

⁷ 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0헌바28 결정

- (1) 수증자의 입장에서 고게 되면, 자신에 대한 과세근거가 된 증여자의 증여행위가 부당한 법적형성이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인되어 조세법적으로는 소급적으로 무효화됨으로써 재산권의 무상 취득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게 된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기왕의 증여세 부과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증여받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되어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2)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조세법적으로는 부인된 증여세액 등을 환급 등을 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그대로 보유될 수 있다면, ‘증여자, 수증자, 양수자 사이의 다단계거래’를 ‘증여자, 양수자 사이의 단일한 거래’로 의제함으로써 납세자가 어떤 내용의 거래 형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에 따른 불공평을 시정한다는 입법목적은 달성하는 것 이상으로, 언제나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등만큼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결과에 이른다.
- (3)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미록 형식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와 납부의무의 주체가 다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증여자의 증여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대상으로 파악한 ‘증여자, 양수자 사이의 양도행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셈이 되므로 결국 그 증복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소득세법상 증여세 과세와의 조정 규정 및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미추어볼 때, 동일한 납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

특히, 위의 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0헌바28 결정 사안은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행위’가 ‘증여자의 양수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일부분을 구성하므로 그 중복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명의신탁 증여의제 행위’가 ‘명의신탁자의 양수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일부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위 결정 사안과 명의신탁 사안은 그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0헌바28 결정에서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행위와 증여자의 양수자에 대한 양도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행위와 명의신탁자의 양수자에 대한 양도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법적 성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뿐만 아니라,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와 증여의제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상증세법 제45조의 2)’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
- (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로지 ‘의제된 양도행위’에 따른 과세만을 함으로써도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증대와 과세편의만을 도모한 나머지 ‘부인된 증여행위에 기초한 과세’와 ‘의제된 양도행위에 기초한 과세’를 서로 양립하게 함으로써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은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증여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동일하게 취급한 바 있다.⁸

또한, 명의신탁 증여추징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헌법재판소 2004. 11. 25.자 2002헌마66 결정에서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을 규정한 법 제43조는⁹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당사자간 약정이 아닌 명의도용,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증여세는 형법상의 벌금이 아닌 조세이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법’이라 한다)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⁹ 헌법재판소 2004. 11. 25.자 2002헌마66 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징)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개정 전 규정으로, 당시에는 현재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달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권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권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보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세의 성격이 조세임을 알 수 있다.^{10,11}

한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로서의 기본적 속성이 결정되어 있고,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가해지는 제재의 크기가 조세회피의 크기에 전혀 비례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위헌 논란이 계속되어 온 규정이다.¹² 이러한 위헌 문제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 여러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고, 명의신탁 증여세가 조세임을 명확히 밝힌 위 헌법재판소 2004. 11. 25.자 2002헌바66 결정 당시에는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의 비율이 5:4에 이를 정도였다.¹³

이처럼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된 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헌적이고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다른 증여 및 증여의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위헌적인 이중과세 또는 원본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를 규정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이중과세의 발생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상증세법 제45조의 2 규정을 명시하고

¹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포기하면서 원천적인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재적 성격의 조세이다(이동진, 규제적 조세의 입법원칙에 관한 연구, 막사학위논문, 2016년, 고려대학교, 152쪽).

¹¹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그 본질이 조세라기보다는 행정상의 제재라는 의견도 있다(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년, 1142-1143쪽).

¹² 배정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대안,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2018년 8월, 국회입법조사처, 248쪽

¹³ 헌법재판소 2004. 11. 25.자 2002헌바66 결정, 2005. 3. 31.자 2005헌바11 결정, 2005. 6. 30.자 2004헌바40(병합) 결정, 2012. 5. 31.자 2009헌바170 결정 등.

있지 않음에 따라, 자녕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차명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 매수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된 자녕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중복적으로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노 주주가 100원에 매수한 주식의 연도 말에 주가가 1,500원으로 상승하였고, 그 후 이를 1,600원에 매도한 경우를 상정한다.

- ①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 혹은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가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양도차익은 매도금액 1,600원에서 매수금액 100원을 공제한 1,500원이 되고, 이 1,5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② 만약 위 주주가 수증자에게 주식을 연도 말에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1,600원에 매도한 경우라면, 1,500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100원(양도가액 1,600원 - 증여재산가액 1,500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총 1,600원(증여세 과세분 1,500원 + 양도소득세 과세분 100원)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 ③ 그런데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1,500원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세를(명의신탁 증여세 평가기준일은 명의신탁 후 가장 가까운 주주명부 폐쇄일이고 이는 통상 연도말이므로, 연도말 주가인 1,500원을 적용하게 된다), 양도행위를 이유로 1,500원(양도가액 1,600원 - 증여자의 취득금액 1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어 총 3,000원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재산가액인 1,500원을 취득가액으로 고지 않는다면, ①, ②의 경우와 다르게 증여재산가액인 1,500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도 부과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결국 ①, ②와 ③의 경우, 발생한 소득은 1,500원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1,500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것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면 1,500원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징의를 실현(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하기 위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행위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세의 과세를 통해서도 그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어느 것도 부과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어 규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¹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의제된 증여행위에 기초한 과세’와 ‘양도행위에 기초한 과세’를 아무런 조정 없이 서로 양립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어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헌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규정이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와 관련된 세법 규정은 이중과세와 같은 위헌적이고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0항 제1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예시규정으로 보아 관련 증여재산가액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합헌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이중과세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종국적으로는 개정을 통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잡한 법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증여세(최고세율

¹⁴ 이종교, 사업자 명의대여의 세법상 취급,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2009년, 한국세무학회, 122쪽.

50%)와 양도소득세(주식의 경우 최고세율 30%)를 아무런 제한 없이 온전히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여기에 명의신탁 증여세의 실질상 필수적인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재산권 침해의 위헌성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토지조과이득세에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원본잠식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¹⁵

토지조과이득세에 대하여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최고세율 50%의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채 30%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원본잠식의 우려까지 있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4. 명의신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검토

구 상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 명의신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였고, 명의신탁자는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하였다. 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 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였다. 다만 명의신탁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세도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당시에 이종과세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였다.

그런데 재산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¹⁵ 헌법재판소 1994. 7. 29.자 92헌바49 결정

토초세는 그 계측(計測)의 객관성 보장이 심히 어려운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과세대상(課稅對象)으로 삼고 있는 관계로 토초세 세율(稅率)을 현행법(現行法)과 같이 고율(高率)로 하는 경우에는 자칫 가공이득(架空利得)에 대한 과세(課稅)가 되어 원본잠식(元本蠶食)으로 인한 재산권침해(財產權侵害)의 우려가 있고, 또한 적어도 토초세와 같은 이득(利得)에 대한 조세(租稅)에 있어서는, 조세(租稅)의 수직적(垂直的) 공평(公平)을 이루어 소득수준이 다른 국민들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토초세는 어느 의미에서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예납적(豫納的)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토초세의 세율체계(稅率體系)를 단일비례세(單一比例稅)로 한 것은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소득이 적은 납세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다.

대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었고,¹⁶ 구 상증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어 명의신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변경되었다.¹⁷

따라서, 현행 법 하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도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 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역시 명의신탁자로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일치하게 되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였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였으므로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68조 제10항 제1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었으나, 위 개정 후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이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더더욱 소득세법 제168조 제10항 제1호에 상증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생겼다.

5. 소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에 상증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이미 과세된 부분에 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¹⁶ 김원석,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조세와 법, 제9권 제1호, 2016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쪽.

¹⁷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III. 조세평등주의 원칙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1. 조세평등주의 원칙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은 물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각종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근대법의 기본원리인 평등원칙이 세법분야에서 발현된 것으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규정이 그 근거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는 주로 세법의 해석과 집행의 면에서의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조세평등주의에 대하여 “이는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 7. 21.자 89헌마38 결정).

이는 조세법률의 내용이 과세대상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상황에는 비슷하게, 상이한 상황에서는 상이하게 그 상대적 차등에 상응하는 법적 처우를 하도록 하는 비례적, 배분적 평등을 의미하고 이는 납세력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담되어야 한다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 즉 조세의 공평부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응능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세권자의 자의가 배제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징수되는 내용의 법률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선정규정과 납세력의 산정규정에 합리성이 배려되어, 결국 과세 적격사유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그 능력에 합당한 과세액이 부과·징수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9. 3.자 89헌가95 결정).

납세의무자들 간에 차별 혹은 동등대우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정의 관념에 합치할 수 없는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1995. 6. 29.자 94헌가49 결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제10항 제1호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제10항 제1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여기서 필요경비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구성되는데(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양도자산의 취득금액 계산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일반적인 증여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제45조의 3 내지 제45조의 5의 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에도,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의제이익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의제이익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¹⁸.

¹⁸ 상증세법 제45조의 3을 도입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위 상증세법 제45조의 3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성 문제 및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를 개정하여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증여의제이익을 더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반

나.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된 차명주식을 양도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다른 증여 또는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모두 동일한 증여세임에도,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그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다른 증여 또는 증여의제 규정과 마찬가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고려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다른 증여 또는 증여의제와 다르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만 다른 증여 또는 증여의제의 경우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과의 비교

헌법재판소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우자 등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는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행위’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과세대상으로 파악한 ‘증여자의 양수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셈이 되므로 결국 그 중복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0헌마28 결정).

해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그 증여가액을 더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산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명의신탁 증여세의 경우 그 실질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의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행위’가 ‘증여자의 양수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는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양도행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셈이 되므로, 그 중복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과의 비교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양도자산의 취득금액 계산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되,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100원에 자산을 취득하였다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1,500원일 때 배우자인 수증자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가 이에 대해 증여세 600원을 납부한 뒤 10년 내에 타인에게 이를 1,600원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은 수증자의 취득가액 100원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6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6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규정이 없다면, 증여세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은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¹⁹

그런데,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이용해 양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와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구조가 동일하다.

¹⁹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와 달리 이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는다. 위 예에서 발생한 소득은 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1500원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100원의 합계액인 1600원이다. 반면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1500원에 대한 소득이 과세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900원[=1600원(양도가액)-100원(취득가액)-증여세(600원)]에 대한 소득이 과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2400원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 실제 발생한 소득 1600원과의 차이인 800원만큼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와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유일한 차이는, 전자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는 것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의 실질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 산정 시 반영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5. 소결

본질적으로 차별 대우를 함에 있어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른 증여 또는 증여의제,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 동법 제101조 제3항의 경우에는 모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 필요경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별처우를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인 규정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의 재분배, 외부불경제 교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미려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명의신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본 잠식의 우려가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다른 증여 또는 증여의제, 소득세법 제97조의 2 및 동법 제101조에서의 증여 및 양도의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개정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년

이종교, 조세법개론, 삼일인포마인, 2023년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2013년

이종교, 사업자 명의대여의 세법상 취급,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2009년, 한국세무학회

배정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대안,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2018년 8월, 국회입법조사처

나성길, 정진오, 명의신탁의 세법상 적용과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조세연구, 제13권 제3집, 2013년 2월, 한국조세연구포럼

김정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9권 제3호, 2017년 2월,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완석,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조세와 법, 제9권 제1호, 2016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진, 규제적 조세의 입법원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16년, 고려대학교

허정준, 주식 명의신탁 과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2014년, 가천대학교

[참고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헌법재판소 2012. 5. 31.자 2009헌바170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11헌가8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16.자 2007헌바115 결정

헌법재판소 2005. 6. 30.자 2004헌바40(병합)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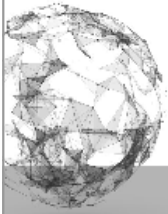
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5헌바11 결정

헌법재판소 2004. 11. 25.자 2002헌바66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0헌바28 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자 92헌바49 결정

헌법재판소 1990. 9. 3.자 89헌가95 결정



제1주제 토론문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황인규 (강남대학교 교수)

제1주제 토론문

황인규 교수 (강남대학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이하 ‘대상 규정’, 이하 발표문의 약어를 모두 그대로 사용)에 따라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발표자께서 잘 정리해주신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최근 2018년 개정 상속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개정 연혁 및 관련 문헌과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바탕으로 ①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②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에 해당하며, ③ 명의신탁 증여세는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많으므로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할 때 위헌적이고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④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최고세율 50%의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최고세율 30%의 양도소득세를 온전히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원본잠식의 우려도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문제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른 증여 또는 증여의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동법 제101조 제3항의 경우에는 모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대상 규정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을 두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과 같은 발표자의 입장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다만 질의를 드려야 하는 지정토론자로서 충실한 토론을 위하여 발표문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발표자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과의 비교

발표자께서는 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0헌바28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우자 등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행위'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과세대상으로 파악한 '증여자의 양수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셈이 되므로 그 중복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자 그에 따라 신설된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처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역시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발표문 III. 3. 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과의 비교).

2.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과의 비교

또한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되,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와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증자인지, 명의신탁자인지라는 차이는 있으나, 이 역시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와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 구조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발표문 III. 4.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과의 비교).

3. 사례를 통한 비교

발표자께서는 또한 어느 주주가 100원에 매수한 주식이 연도 말에 주가가 1,500원으로 상승하였고, 그 후 이를 1,600원에 매도한 경우를 상정하여 해당 규정의 불합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경우, 명의신탁을 이유로 1,500원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세를, 양도행위를 이유로 1,5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어 총 3,000원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증여자가 100원에 자산을 취득하였다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1,500원일 때 배우자인 수증자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가 이에 대해 증여세 600원을 납부한 뒤 10년 내에 타인에게 이를 1,600원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은 수증자의 취득가액 100원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6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4.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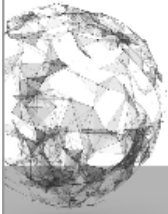
그런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위 사례에 적용해 보면 명의신탁자(A)가 100원에 매수한 주식(X)을 주가가 1,500원일 때 명의수탁자(B)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세법상 1,500원에 대해 명의신탁자(A)가 명의신탁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상 해당 주식의 명의자는 명의수탁자(B)가 되며, 따라서 차후에 제3자(C)에게 해당 주식을 1,600원에 양도한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A)가 아닌 명의수탁자(B)가 되는 것이 아닌지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5. 담세력에 대한 질문

발표자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명의신탁 증여세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조세라고 보는 입장이 다수이고 일부 행정상의 제재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명의신탁 증여세가 담세력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담되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세가 위헌적이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여러 차례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거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행 법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과세대상으로 파악한 '증여자의 양수자에 대한 양도행위'와는 달리, 명의신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담세력을 전제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는 다르므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발표자의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주제 토론문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문

한국법제연구원 황헌순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조세법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신 김두형 회장님과 학회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변호사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실무를 모르는 입장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발제자님의 발제문을 보니, 신탁법 개정에 따라 신탁세제에 대한 개정도 2020년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신탁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발제자께서는 ‘구 상증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어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변경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부분이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증세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발제자께서 다년간 전문적인 실무를 경험하시며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중요성과 시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에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며, 본 발제도 그러한 내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님께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에 대한 소회와 의견을 여쭙보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상증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 세법의 입법 불비

먼저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증세법 개정 전에는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수탁자였지만, 동법 개정 후에는 납세의무자가 신탁자로 개정되었다는 점이 소득세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법의 불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라면, 본 발제문에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 새로운 입법문

적 개선방안에 본 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기타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필요경비와의 비교검토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은 과거부터 재산 분산에 이용되어 있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본다면, 발제자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필요경비 불인정을 의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이러한 의문이 생긴 이유는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는 상증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필요경비 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신탁이익의 증여와 명의신탁 증여를 별도로 보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여쭙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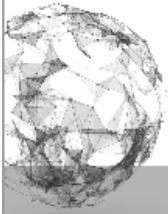
부차적으로 혹시 추후 본 발제문이 논문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한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신탁과 증여의제 신탁의 차이, 다른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데 명의신탁의 경우 불인정되는 점 등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기타 사례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신다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물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해석

위와 같이 입법자가 명의신탁 증여의 경우를 별도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또 하나의 의문으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입니다. 입법자는 결국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조세부담 경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며, 조세회피의 부당성으로 인해 필요경비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위법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도 유사한 논의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조세회피행위가 부당하긴 하지만, 위법행위는 아닌 이상 그 입증책임 역시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인데,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무상으로도 그러한지, 현행 규정에 대해 혹시 좀 더 말씀하시고 싶은 고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좋은 발제문으로 건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정현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한 토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주제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매매 시 부 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대한 고찰

발표자 서윤식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매매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대한 고찰

I. 들어가면서

조세는 국민들이 민법, 상법 등 사법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 그 자체 또는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담세력을 포착하여 부과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은 법에 제한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법률행위자유 원칙,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행위자유 원칙을 이용하여 납세자들은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행위를 함에 있어 조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법형식이 아닌 이상(異常)한 법형식을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와 같이 조세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異常한 법형식을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조세회피라고 하는바,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원칙을 지해한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부인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이었다면 행하였을 통상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의 부인이 실정 조세법에 규정된 것이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다. 조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란 납세자기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¹⁾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은 과세의 공평성을 지해하고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41조와 제101조, 국세조세조정법 제6조와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증여예시 규정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²⁾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인세법 제52조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

1) 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267판결 : 2006.1.13. 선고 2003두13267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등.

2) 상증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증여의 유형으로 예시된 것 중 상당수는 사실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납세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적법·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납세자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즉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협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송도금 지급,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신의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잔금청산시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간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계약체결 시의 시가와 잔금청산 시의 시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소재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거래가격의 등락이 심하여 매매계약 체결시의 거래가격과 잔금청산시의 거래가격 간에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시기와 잔금청산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즉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가 언제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납세자의 행위가 부당행위(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가격 또는 양도가격을 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시가를 기준을 할 것인지의 문제, 즉 취득가격 또는 양도가격 계산의 기준시기의 문제가 발생한다.

3) 미국, 일본 등 외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 연방 소득세법 제482조는 “재무장관은 동일한 이해관계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둘 이상의 조직, 거래, 사업(법인이든 아니든, 미국 내에서 설립되었든 아니든, 특수관계인이든 아니든)의 탈세를 방지하거나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직, 거래 또는 사업 간에 총소득, 비용,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배분, 안분 또는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직, 거래 또는 사업 간에 총소득, 비용,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배분, 안분 또는 할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법인세법 제132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에 개기하는 법인(동족회사 등을 말한다)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결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에 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결손금액 또는 법인세의 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조약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두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 독립적인 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기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OECD 모델조세협약 제9조 제1항). 이러한 원칙을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 한다.

4) 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4772판결 ; 1997.5.28. 선고 95누18697판결 ; 2005.4.29. 선고 2003두15249판결 등.

이하에서는, 먼저 법인세법 및 소득법상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지가 매매에 대한 과세상 취급을 살펴본 후,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지가 매매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시기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동향을 살펴보고,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지가 매매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시기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II.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지가 매매에 대한 과세상 취급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에 대한 과세규정은 각 세법에 있으나, 여기에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에 대한 과세상 취급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1.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⁵⁾⁶⁾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지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즉 부당행위

5) 부당행위계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② 행위계산이 부당할 것, ③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조세회피의도는 요하지 아니한다.

6)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행위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법인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계산은 법인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소득금액 또는 재산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다만, 계산은 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행위를 부인하면 계산도 그에 따라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행위의 부인은 계산의 부인을 수반하지 않는 한 그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은 모두 계산의 부인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행위와 계산을 구별할 실익은 별로 없다.

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3호).⁷⁾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3억원 또는 5%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⁸⁾

이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이 경우 2단계에 걸친 조정을 하게 된다.

(1) 자산의 저가 양도

1) 법인의 소득금액 조정 (1차 조정)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자산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한 그 부당행위(저가양도)를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시가와 양도가액만큼 적게 계상된다. 따라서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가시킨다. 예컨대 법인이 시가가 10억원인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게 7억원에 양도한 경우 그 7억원에 양도한 행위를 부인하고 시가인 1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차액 3억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2) 소득처분 (2차 조정)

법인의 저가양도를 부인하고 시가에 따라 거래가 행해진 것으로 보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초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비하여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 소득금액이 증

7) 이 경우 시가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즉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8)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과세관청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부인된 법인의 행위계산에 갈음할 행위계산을 어떻게 재구성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액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저가 거래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부당행위계산의 경우에 비하여 비교적 쉽게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 즉 시가에 의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가한다. 그러나 그 증가된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자산이 법인에 남아있지 않고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시가로 거래했다면 법인에 있어야 할 자산이 법인에 남아있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에 양도한 후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⁹⁾

(2) 자산의 고가매입

1) 법인의 소득금액과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1차 조정)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한 그 부당행위(고가매입)를 부인하고 시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 및 순자산액을 계산한다. 자신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그 자체민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 자산의 가액이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대계상된다. 따라서 고가매입한 사업연도에는 그 과대계상된 자산의 가액을 감소시킨다. 예컨대, 시가가 10억원인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주주로부터 15억원에 매입한 경우 15억원에 매입한 행위를 부인하고 시가인 1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¹⁰⁾

2) 소득처분 (2차 조정)

고가매입의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만큼 자신을 감소시켜야 하는바, 그 감소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거래대금으로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어 있다. 즉 시가로 거래했다면 법인에 있어야 할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이 법인에 있지 않고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어 있다. 따라서 시가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매입가액과 시가와와의 차액은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소득세법

(1)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개인의 고지가거래

9) 거래상대방(익금의 귀속자)이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상여,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10)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순손익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자산을 고가매입한 사업연도에는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 5억원을 손금신입, △유보로 처분하여 자신의 가액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신입,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그 후 그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 기업회계상의 자산가액이 세무회계상의 자산가액보다 과다계상되어 있음에 따라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세무회계상의 감가상각비보다 많이 계상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손금불신입, 유보처분한다.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¹¹⁾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하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²⁾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 등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거래가액과 시가와액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개인사업자 등의 고저가 양도양수시에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상의 고저가 양도양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처분규정이 없으므로 거래가액과 시가와액의 차액을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저가매수인 또는 고가매도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즉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 상당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5조 1항, 상증법 시행령 26조 2항).

(2)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의 고저가거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¹³⁾

1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이 경우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3)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익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익2부터 제58조익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

개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한 부당행위(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를 부인하고 시가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¹⁴⁾ 이 경우 상증법 제35조의 따라 저가양수인 또는 고가매도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Ⅲ.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매매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시기에 대한 판례 및 학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매의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잔금청산시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에 따라 계약체결 시기의 시가와 잔금청산 시기 등의 시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시기와 잔금청산시기(즉 양도일 또는 취득일)가 다른 경우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즉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언제인지의 문제와 납세자의 행위와 부당행위계산(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시가를 기준을 할 것인지의 문제, 즉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계산의 기준시기의 문제가 발생한다.

1.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¹⁵⁾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의 입장도 동일하다.¹⁶⁾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하며, 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7항).

14) 다만,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15)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학계에서도 위 대법원의 견해에 대하여 이론이 없다.¹⁷⁾

2.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계산의 기준시기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그 거래가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 대하여 이론이 없다. 문제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기와 거래 이행시의 시가 중 어느 시점의 시가로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익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고지가 양도양수의 경우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어느 시점의 시가에 의하는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지가 매매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어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어느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법원의 견해와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저가양도의 경우 그 저가양도를 부인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를 어느 시점의 시가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금청산일 등 양도시기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여 왔다.¹⁸⁾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본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고리한 결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스스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1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2.8.31. ; 법인세과-3193, 2016.12.15. ; 조심 2015서-1956, 2015.7.27. 등.

17)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7, 597면 ; 이종교, 「조세법개론」, 삼일인포마인, 493면 ; 임승순·김용택, 「조세법」, 박영사, 2023, 678면 ; 강석규,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 2023, 687면 ; 송동진, 「법인세법」, 삼일인포마인, 2023, 373면.

18)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한편, 고가매입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및 소득처분 대상 금액¹⁹⁾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시가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²⁰⁾에서,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지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닌 점, 이러한 기준시기의 구별은 고가매입의 경우의 세부회계 처리방법, 소득처분의 시기와 방법에 비추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에도 토지 등의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인 반면,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21) 22)}

위와 같이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매매 시 매매계약의 체결시기와 양도·취득 시기가 다르다면 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19) 고가매입의 경우 소득처분 대상 금액은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즉 익금산입하는 금액이다.

20) 해당 사안은 상당히 복잡하나 단순화하여 간략히 요약하면, 원고가 1995.8.25.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부터 쟁점 토지를 87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6.6.5. 잔금을 지급하였는 바 피고가 쟁점 토지의 시가를 20억원으로 보고 차액 67억원을 익금산입, 상여로 처분한 데 대하여 원심은 매매계약 당시의 감정평가액 19억원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보고 처분청이 19억원을 상회하는 20억원을 시가로 보아 차액을 익금산입,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시기(즉 잔금지급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취득시기의 시가(23억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소득처분 대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한 해석에서 “이 사건 판결은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의 기준시기에 관한 최초의 판시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고 있다(박성규,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시기 및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 『대법원판례해설』 84호(2010년), 법원도서관, 234면).

22) 조세법 전문가들은 이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① 원심은 이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후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시기를 부당행위계산 여부 결정시기와 동일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았으나, 대상판결은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거래시기가 아니라 취득시기라고 지적한 것이다. 저가양도, 고가매입, 소득처분의 시기와 방법 등에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등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등 양자 간에 기준시기를 달리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님을 거듭 명확히 한 판결이다(이진오, “2010년 조세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15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 132면).

② 특수관계자가 분여받은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측정하기 위하여는 거래시기(계약 체결일)가 아니라, 양도시기(대금 청산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종전 대법원 판결은 양자의 기준시기 달리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대상 판결은 양자의 기준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판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대상판결은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관한 최초의 판시로서 그 의의가 있다(정광진, “2010년 법인세법 판례 회고”, 『조세법연구』(17-1), 세경사, 2011, 475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도 위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고 있다.²³⁾

(2) 학계의 견해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조세법학자, 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은 모두 위 판결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²⁴⁾ 조세법학자 등 중 몇 분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김완석 교수님은 “거래계약의 체결시기와 양도·취득시기가 다르다면 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고 있다.²⁵⁾

이창희 교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래의 재구성을 통하여 사법상의 최종결과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세법상 법률효과는 달라지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결국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함은 시가를 벗어난 실제 행위를 재구성하여, 특수관계인들이 시가에 의한 행위를 하고 그와 더불어 차액 부분이 특수관계인에게 흘러나가는 거래의 묶음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석에서 “여기에서 차액이란 논리상 재산 취득시점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고 부당여부 판단시기와는 다른 문제”라고 하고 있다.²⁶⁾

강석규 변호사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거래 약정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에 따라 종국적으로 익금산입을 하고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 이행된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 요컨대, 거래조건의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저가양도나 고가매입 등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의 이행을 기준으로 볼 때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거래조건의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의 이행을 기준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역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세법상 매우 의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²⁷⁾

위와 같이 조세법 전문가들은 모두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23) 조심2015서1956, 2015.7.27. ; 조심2019중2596, 2019.12.3. ; 심사증여 2022-48, 2023.1.18.

2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23. 1080면 ; 김완석·황남석, 앞의 책, 609면 ; 임승순·김용택, 앞의 책, 678면 ; 이종교, 앞의 책, 493면 ; 강석규, 앞의 책, 688면 등.

25) 김완석·황남석, 앞의 책, 609면.

26) 이창희, 앞의 책, 1080면.

27) 강석규, 앞의 책, 688면.

IV.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매매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시기에 대한 판례 및 학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매매 시 매매계약의 체결시기와 양도·취득시기가 다르다면 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대법원과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로 다음을 들고 있다.

- ①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시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과 학계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 오해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기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²⁸⁾ 또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신장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²⁹⁾ 그러나 이 견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잘못된 견해이다.

법인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행한 사법상 유효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면 통상 선택했으리라고 인정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 재구성(reconstruct 또는 re-characterize)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³⁰⁾ 따라서 납세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보

28)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29)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다 낮은 기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기액으로 매입하는 행위(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로 매입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행위를 재구성한 후 그 재구성된 행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시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로 매입한 것으로 행위를 재구성하는 경우 그 시가는 당연히 거래 당시의 시기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는바, 이 경우 정상적인 거래는 거래 당시의 시가로 거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³¹⁾

예컨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가 10억원인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8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시가인 1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계약체결 당시 시가가 10억원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2억원에 매입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 당시의 시기인 10억원에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거래 당시의 시기인 10억원에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대금청산일 등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시가가 8억원 또는 12억원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구성된 거래내용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의 시기인 8억원 또는 12억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계약 당시 시가 10억원 자산을 시가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청산일에 그 자산의 시기가 8억원으로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은 그 계약상의 거래금액 1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계약 당시 시가 10억원 자산을 시가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청산일에 시가가 12억원으로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은 재산의 매입대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12억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외 같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납세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충

30) 김원석·황남석, 앞의 책, 592면 ; 이창희, 앞의 책, 1080면 ;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5, 544면 ; 최명근, 「법인세법」, 세경사, 1997, 483면 ;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138면 ; 金子 宏, 「租税法」, 弘文堂, 214, 455~456면.

31)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568조 제1항). 따라서 그 매매계약 이행 시에 그 자산에 대한 시가가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행시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시의 시가가 계약체결시의 시가보다 상승하였다고 하여도 그 상승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시의 시가가 계약체결시의 시가보다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된 기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매매목적물의 시가가 변동되는 경우 그 가액 변동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시지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니, 기액변동이 심하다면 계약당시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매목적물의 가액이 계약 체결 시보다 크게 하락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매매목적물의 가액이 계약 체결시보다 크게 상승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

족하면 그 거래를 부인하고 그 당시의 정상적인 행위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고저가 양도의 경우 거래 당시의 시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한 후 그 재구성된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즉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리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대법원의 견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른 잘못된 견해이다.

2.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의 의미 오해

대법원은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도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신정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함에 따른 잘못된 견해이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³²⁾은 그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느 과세기간 또는 어느 사업연도의 양도가액(익금)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자산의 양도가액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³³⁾은 어느 과세기간 또는 어느 사업연도에 납세자의 자산으로 인식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산의 취득가액과는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32) 개인사업자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사업소득(매매손익)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법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이와 같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양도자의 입장에서 양도일은 취득자의 입장에서 취득일이 될 것이므로 대금청산일 등은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일 및 취득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3)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지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지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2호).

매매로 인하여 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의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양도일 또는 취득일에 그 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다.

예컨대, 법인이 2023년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가 10억원인 자산을 8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2024년인 경우, 과세관청은 거래 당시의 시가인 1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에 시가가 12억원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10억원이지 12억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그 양도가액을 2024년의 익금으로 계상할 뿐이다.

또한 법인이 2023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당시 시가가 10억원인 자산을 15억원에 매입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24년인 경우, 과세관청은 거래 당시의 시가인 10억원에 매입한 행위로 거래를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된 행위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잔금청산일 현재 시가가 12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가액은 12억원 아니라 10억원인 것이다. 다만,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2024년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지기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견해는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잘못 이해함에 따른 잘못된 견해이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비외 같이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기 매매 시 매매계약의 체결시기와 양도·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그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도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이니리 거래 당시의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기 매매 시 매매계약의 체결시기와 양도·취득시기가 다르다면 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견해와 학설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잘못된 견해이다.

V. 나가면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을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헌법 107조 2항),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제8조). 대법원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만 하급심을 기속하나, 하급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까지는, 사실상 법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 자신의 고저가 매매 시 매매계약의 체결시기와 양도·취득시기가 다르다면 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견해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그 견해에 따라 과세 및 조세심판을 하고 있다.³⁴⁾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매매를 한 납세자들에 대하여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⁵⁾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들은 하루 속히 변경되어야 한다. 이 글이 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34) 조심2015서1956, 2015.7.27. ; 조심2019중2596, 2019.12.3. ; 심사증여 2022-48, 2023.1.18.

35) 최근 국세청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시 시가 9억원인 이피트를 7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가액을 7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과세관청이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잔금청산일의 시가 1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양도시기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체결시기의 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달라는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심사증여 2022-48, 2023.1.18.).

참고문헌

강석규,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 2023.

김두천, 「세법학」, 박영사, 1994.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7.

박성규,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시기 및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 「대법원판례해설」 84호(2010년), 법원도서관, 199~234면.

송동진, 「법인세법」, 삼일인포마인, 2023.

이전오, “2010년 조세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15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 126~139면.

이종교, 「조세법개론」, 삼일인포마인, 2023.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5.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23.

임승순·김용택, 「조세법」, 박영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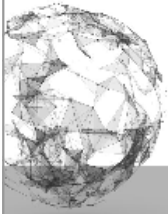
장재식, 「조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정광진, “2010년 법인세법 판례 회고”, 「조세법연구」(17-1), 세경사, 2011, 459~498면.

최명근, 「법인세법」, 세경사, 1997.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金子 宏, 「租税法」, 弘文堂, 2014.



제2주제 토론문①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쳐가 매매 시 부당행위
계산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김정식 (세무사, 김정식세무회계사무소)

토 론 문

세 무 사 김 정 식

발표문을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회에서 오랫동안 주제 발표와 토론을 계속해 오신 점에 대해 존경과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발표된 주제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논제로 보입니다. 발표자는 먼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된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을 설명하셨고, 다음으로 이러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하 ‘부인규정’으로 약칭합니다)에 저촉된다면, 그때는 어느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논점과 관련된, 판례를 통한 법원의 해석과 학계(3분)의 견해를 조사해 밝혀셨습니다. 결론은 대법원의 판례는 물론 그에 따르는 학계의 견해마저 부인규정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 온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의 입장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란 점에는 발표자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약간 다릅니다.

먼저 토론자의 의견을 밝히기 전에, 염치 불구하고(건방졌다는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발표문과 관련해 토론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헛갈리기 쉽도록 너무 어렵게 쓰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7쪽 중 본문 마지막 앞줄과 마지막 줄에서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쓰셨는데,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당시’를 “계약일”로, 또 8쪽 3~4줄 중 ‘거래 이행시의 시’를 “잔금청산일”로¹⁾ 쓰시고, 그 이하부터는 ‘계약일’ 또는 ‘잔금청산일’로 표현하셨더라면 독자가 보다 쉽게(그리고 편안하게) 이해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우리들로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용어를 선택하시면, 독자는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발표자님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법원은 문제된 사안²⁾에서 1차적으로 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 삼아 부인규정에 저촉되는 지를 판정하고,³⁾ 만일 해당된다면 그때(2차적)는 대금(잔금)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라⁴⁾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사건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잣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는 왜

1)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당시」는 (...이하 ‘계약일’로 약칭한다)로, 또 ‘거래 이행시의 시’를 (...이하 ‘잔금청산일’로 한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자산의 저가양도의 경우 그 저가양도를 부인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를 어느 시점의 시가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 사안에서...」라는 부분.

3)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라는 부분.

4)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라는 부분.

두 가지 잣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잣대에 대한 필요성은 법문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납니다.⁵⁾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을 함축하면서, 그에 대한 해석배경은 바로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우리를 헛갈리게 하는 것은 바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선택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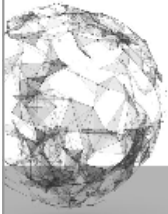
토론자의 눈으로 볼 때 ‘선택의 이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소득관련 세법이 취득시기(및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모두 전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계약시’를 기준한 관련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적(잔금청산일)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부당하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대법원의 판단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 및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의 의미를 오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무런 설명 없이 단순히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결문은 가히 횡포적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해석권은 독보적으로 법원이 가지는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법관들만이 통하면(자기들만이 알고 이해하면) 족하다는 전유물적 권한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법률(부인규정)이 제대로 된 과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과세요건은 가능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어야 했는데도, 토론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생명은 예측가능성이 크게 한 몫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본 사건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이를 간과했고, 그로 인해 납세자로서는 생각지도(예측하지도) 않게 날벼락을 맞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부인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충실하지 못한, 즉 서투르고 어설픈 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입법할 때 박수치면서 법을 통과시킨 국회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권자인 정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물론 선례(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같은 방식의 처분을 관행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이상, 이를 바꾸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보완을 통한 개선밖에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라고 하는 부분.



제2주제 토론문②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가치가 매매 시 부당행위
계산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매매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대한 고찰

정재연(강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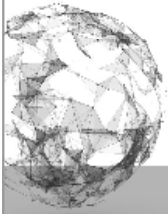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가 또는 저가 매매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시기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동향을 살펴보고,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가 또는 저가 매매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시기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그 거래가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대법원,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과 학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문제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 이행시의 시가” 중 어느 시점의 시가로 할 것인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가 또는 저가 매매 시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와 양도 및 취득시기가 다르다면 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대법원 판결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저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든 납세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충족하면 그 거래를 부인하고 그 당시의 정상적인 행위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고가 또는 저가 양도의 경우 거래 당시의 시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한 후 그 재구성된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리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대법원의 견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른 잘못된 견해라고 보았다. 또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견해는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잘못 이해함에 따른 잘못된 견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2023년 1월 국세청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시 시가 9억원인 아파트를 7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가액을 7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과세관청이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잔금청산일의 시가 1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양도시기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체결시기의 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달라는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사례를 들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리적인 판단(또는 오해)을 떠나서 위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즉,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과 시가의 판정시점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재산세 부담의 한계와 제한

발표자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보유세 부담 제한의 이중성 문제와 개선방안

- 보유세 부담 제한 조치를 중심으로 -

임상빈*

요 약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어, 보유세의 부담과 제한이 이중적으로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보유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기관, 세율이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유세 부담을 제한하는 공정시장가격비율, 세율의 상한도 이중적이다.

이러한 보유세의 이중적 구조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이원화되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있다. 긍정적 입장은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전국단위 합산과세 체계를 구성하여, 자산이 많은 납세자에게 누진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여,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부정적 입장은 보유세가 이원화되어 납세자의 담세력에 맞는 세부담을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토지와 주택만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라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서 제기하는 이원화된 보유세 구조와 세부담을 제한하는 구조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납세자가 납부 능력을 고려한 보유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는 근본적으로 세부담이 높아지는 경우 납부의 한계를 보일수 밖에 없는 구조로, 부동산가격변동과 정책방향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변동하는 양상을 보일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에서 재산세를 공제하여 개인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유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성격이 있어, 보유세가 강화되는 경우 납부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방안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보유세제의 이중성으로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소득과세 체계에서 조정기능과 금융권의 납부편의 제공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향후, 우리 사회가 글로벌화되고 고령화되는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되, 담세력에 맞는 통합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보유세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핵심어 :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미국 재산세,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3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 sbin.lim@kilf.re.kr

I. 서론

어떠한 조세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제도 설계 시 세계적인 보편적 제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특수 환경을 고려한 특수한 제도를 만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소득과세는 일반적으로 보편성이 높게 설계된다. 국내 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외 소득도 있고, 각국은 소득과세 시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제도의 보편성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국가내의 한 지역만의 과세물건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각 지역의 부동산 환경과 부동산 제도를 고려하여 특수성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보유세제는 일제시대의 재산세 체계를 근간으로 발전해왔다. 1980년 이후 토지가격 급등과 같은 부동산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재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는 이원화 체계를 갖게 되었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보유세는 이원화되었는데, 그 이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논란을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이원화된 보유세 체계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부담 억제 방안이 논의되면서, 세부담 상한,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 상한, 세율의 특례 및 1주택자 특례,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별 공제 등 다양한 제도가 논의되어 보유세제에 반영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면서 각 세목별로 다양한 세부담 강화와 억제 제도가 혼재되어, 복잡한 제도로 발전하였다. 결국, 현재의 보유세는 물건 보유에 대한 일정률을 과세하는 물세라는 기본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인세적 성격이 크게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유세제의 이원화된 부담과 제한구조를 검토해 보고,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납세자의 담세력에 맞는 보유세 부담 합리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보유세 제도

1. 보유세 체계

가. 보유세와 과세원칙

1) 보유세의 개념

보유세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산 과세를 보는 시각마다 달라, 한마디로 보유세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유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조세의 기본 원리와 이념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오늘과 같이 소비세나 소득세 등이 잘 발달한 상황에서 자산 과세는 ① 사용자 비용, ② 소득세 및 소비세의 보완, ③ 능력원칙의 구현, ④ 부의 집중 완화 등 정책 목적에서 존재의 필요성이 있다.¹⁾ 보유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를 과세 베이스로 하는 세금이다. 자산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될 때 그 가격이 결정되나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보유세를 과세해야 하므로 자산가치의 평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2) 헌법상 재산권 보호와 보유세

우리나라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²⁾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은 자유주의 경제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재산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³⁾ 재산권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공권의 재산권 보호 모두를 내포하고 있으며, 조세의 경우에는 금전상 지급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재산권의 사용, 수익 또

1) 박태원·현진권, 「조세론」, 법문사, 2000., 455-457면.

2) 헌법 제23조 제1항.

3) 이동식, 「일반조세법」(제8판), 준커뮤니케이션즈, 2021., 37면.

는 처분 중 일부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무의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⁴⁾

구(舊)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가 많은 경우에 재산권의 침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⁵⁾ 세법 이론상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 된다고 하더라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원본에 대한 과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과세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과세가 원본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⁶⁾

3) 담세력과 보유세

담세력이란 국민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한다. 즉 경제적 관점에서 과세물건은 재산,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취득 소유, 이용, 소비, 이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의미한다.⁷⁾

이와 관련, 대법원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 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 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라고 판시한다.⁸⁾ 이처럼 대법원은 재산세는 보유 재산에 담세력을 인

4) 이준봉, “최근 부동산 세제 등에 관한 비판적 검토”, 지방세미래포럼(제12회) 자료집, 한국지방세학회, 2021. 11., 10면.

5) 이동식, 앞의 책, 38면.

6) 이동식, 위의 책, 39면.

7) 이진오, “조세의 징표로서 담세력”, 「조세논총」 제1권 제1호, 한국조세법학회, 2016. 12. 100면.

8)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 시에는 담세력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담세력은 조세의 최소한의 징표이므로, 담세력이 전혀 없는 곳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⁹⁾

또한 보유세와 담세력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지만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그 담세력을 부적절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한 견해가 있다.¹⁰⁾ 따라서, 보유세 관련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의 현실적 납부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호에 기반한 과세권의 행사를 통해 조세법률주의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¹¹⁾

나. 보유세의 연혁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일본의 세법상의 체계를 바탕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과정에서 일본과는 다른 종합과세 형태가 발전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보유세 체계를 갖게 되었다.

재산세는 1961년 12월 8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가옥, 광고 및 선박이었으며, 토지는 임대가격, 가옥은 가옥의 평수를 표준으로 하여 대지 등급과 가옥의 구조, 종별 및 용도별 구분에 의하여 등차를 두어 정한 지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재산세는 물적 과세이나, 우리나라에서 인적 과세 성격의 합산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7년 토지과다보유세에서 시작된다. 토지과다보유세는 종합토지세로 개편되었다. 개편 과정에서 종합토지세를 도입 시, 토지분 재산세 모두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9) 이전오, 앞의 논문, 113면.

10) 박민·안경봉,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조세법연구」 제14집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08. 12., 284면.

11) 임상빈,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 일원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2023. 2., 44면.

보유세 본질에 반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¹²⁾ 그러나 2005년 당시 정부는 거래세 부담은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불균형 문제,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다.¹³⁾ 이와 같이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현재의 이원적인 보유세제가 구축되었다.¹⁴⁾

2. 보유세의 부담 체계

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1)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¹⁵⁾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¹⁶⁾ 이처럼 지방세법 제106조에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 구분을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에서도 재산세와 같은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구분하는데, 이와 같은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대상 유형을 구분하여 차등적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다.¹⁷⁾

12) 권강웅, 「납기고 싶은 지방세 이야기」, 동양정보문화사, 2002., 98면 : 현행 토지과나 보유세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합토지세는 보유세 본질을 망각한 것으로 정책세로 인해 추후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세로 환원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13)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발표, 2004. 11. 15., 6면.

14) 본 연구에서는 보유세 연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을 생략한다.

15) 지방세법 제105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16)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17) 임상빈, 앞의 논문, 88면.

2) 과세의무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할 때마다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 소유자의 예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등과 같이 상황에 맞게 납세의무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²⁰⁾ 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²¹⁾

토지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²²⁾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²³⁾

18)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19) 지방세법에서 납세의무자를 규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실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세에서만 “사실상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공부상 소유자 확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2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2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나. 과세표준과 세율

1)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을 구분하고, 토지는 종류와 유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²⁴⁾ 재산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토지와 주택은 누진체계이며, 그 외는 비례세율 구조이다.²⁵⁾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²⁶⁾

〈표 1〉 재산세 세율과 주택세율 특례

구 분		세 율	
토 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23) 종합부동산세법 제111조.

24)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25)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26)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주택	·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외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선박	·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가) 주택의 과세표준과 세율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시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²⁷⁾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세율 공제 제도를 통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세액은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²⁸⁾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2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세액은 산출된 세액에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²⁹⁾

<표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구 분	세 율	
2주택 이하를 소유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 +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20만원 + (6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천140만원 + (12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6억원 이하	7천220만원 + (5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 + (94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3주택 이상을 소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6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천160만원 + (12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 + (5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 + (94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³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29)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30)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금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³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구 분	세 율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 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천500만원 + (1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 + (4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 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원 이하	1억원 + (2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3. 보유세 세부담 제한제도

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³²⁾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의 비율을 말한다.³³⁾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의 일정비율을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시행되었다. 2005년 당시 종전 재산세 부담을 고려하여 50% 수준으로 설정하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적

3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2항.

32) 2009.2.6.자 법률 제942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시 처음 도입되었으나 부칙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에 따라 그 적용은 2008년도분 재산세(주택)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다.

3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용비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였다. 2009년 적용비율이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변경되면서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적용하였다.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45%가 적용되었으며, 2023년은 3억원, 6억원 기준에 따라 43%, 44%, 45%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당시부터 100분의 80이 적용되었다. 201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5%씩 인상하다가 2022년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사유로 100분의 60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따라 물건별 재산세 부담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재산세의 경우, 당초는 물건별 비율을 설정하였으나 2023년부터 가격대별 설정을 통해서 사실상 가격 수준별로 세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가격차이에 따른 차등적인 재산세 부담 제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표 4〉 연도별 과세표준 적용비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연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토지, 주택	토지, 건축물	주택	비고
2005년	100분의 80	100분의 50	100분의 50	적용비율
2006년	100분의 80	100분의 55	100분의 50	적용비율
2007년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50	적용비율
2008년	100분의 80	100분의 65	100분의 55	적용비율
2008년	100분의 80	-	100분의 50	적용비율
2009~2018년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100분의 85	100분의 70	100분의 60	공정시장가액비율
2020년	100분의 90	100분의 70	100분의 60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년	100분의 95	100분의 70	100분의 60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	100분의 60	100분의 70	100분의 45	한시적용
2023년	100분의 60	100분의 70	43%, 44%, 45%	3억, 6억 구간

나. 보유세 세부담 제한제도

1) 보유세 세부담상한

세부담 상한제도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

속토지로 통합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의 과표 산정방식을 종전의 원가방식에서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세법을 개정(2005. 1. 5.)하면서 2005년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주택에 대하여 종전에 원가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시가방식으로 일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세부담 인상폭을 제한하도록 세부담 인상 상한제(circuit breaker system)를 마련한 것이다. 세부담 상한 대상은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이다.

2023년 과표상한제도 도입 전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세는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였다.³⁴⁾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였다.³⁵⁾

34) 지방세법 제122조.

2022년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 법인 소유의 주택은 가격별 세부담 한도 적용이 배제되어 재산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하였다.³⁵⁾

코로나19 시기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가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이 됨에 따라 법인에 대한 보유세 강화 차원에서 세부담의 상한 한도를 배제한 것이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 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적용 기준

구분		세부담 상한율
토지, 건축물, 법인소유 주택, 선박, 항공기		150% 초과 불가
주택 (법인소유 주택 제외)	공시가격 또는 산정가액이 3억원 이하	105% 초과 불가
	공시가격 또는 산정가액이 3~6억원 이하	110% 초과 불가
	공시가격 또는 산정가액이 6억원 초과	130% 초과 불가

현행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분과 도시지역분 재산세 산출세액 또는 각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 중 낮은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도출한다. 전년도 납부세액에 세부담상한비율을 곱하여 세부담상한 적용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한도로 설정하였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아래와 같이 세부담 상한을 계산한다.

35) 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이하.

36) 2022년부터 주택 재산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개인 납세자에게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하여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경우까지 세부담 상한의 주택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의 과세형평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text{재산세} + \text{세부담상한선 종부세액}^*) - \{ \text{전년}(\text{재산세} + \text{종부세}) \times 150\% \} \\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누진공제}) - (\text{공제할 재산세액} + \text{세액공제액})$$

2) 재산세의 주택과표 상한과 특례

가) 과표상한제(2024년 시행)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주택 과표상한제 도입 취지가 나와 있다.³⁷⁾ 이 제도의 취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는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21년, '22년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공동주택: '21년 19.05%, '22년 17.22%)은 재산세 부담을 급증시켰는데, 이에 따라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하였다. 과세표준상한액은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상한율을 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가산하였다. 여기에서, 과세표준상한율은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에서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과세표준 상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시행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신설되지 않았다.

나) 1세대 1주택 세율의 특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세율의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2022. 6. 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근거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

37)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1. 25.

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같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재산세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한 평가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부담제한 조치를 통해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와 특례

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한도 80%까지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게 된다.³⁸⁾ 연령별 공제율은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이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이다.³⁹⁾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층에 대한 담세력을 고려한 경감조치와 장기보유에 따른 재산세 경감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를 두고 있는데, 보유세에서 장기보유에 따른 경감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⁴⁰⁾

재산세의 기준에 따른 경우 1주택의 지분 소유자도 1주택으로 주택소유자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2주택

38)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39) 종합부동산세 제9조 제6항 및 제8항.

40) 종합부동산세 제10조의2.

자로 볼 여지가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다. 비교 검토

1) 세부담상한과 과표상한 비교

세부담 상한과 과표 상한은 유사한 제도이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두 제도 모두 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재산세 부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세부담 상한은 토지와 건물, 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나 과표상한은 주택에 대해서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은 그 원칙이 50%이나 주택 상한의 경우 5%, 10%, 30%로 차등화되어 있으며, 과표상한은 시행령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차등화가 가능하다.⁴¹⁾ 세부담 상한은 세율 적용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조정하는 제도이나, 과표상한은 세율 적용 이전에 적용된다. 상한 한도를 넘는 과표에 대한 이월 문제는 시행령이 미제정되어서 차이를 알 수 없다. 세부담 상한제도와 과표상한제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세부담상한제도와 과표상한제도 비교

구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비교
	세부담상한	세부담 상한	과세표준 상한	
분류	국세	지방세	지방세	
대상 범위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주택	지방세 건물 등
상한 범위	50%	50%	5%	과표상한은 부동산시장 고려 차등
상한 적용	세액기준	세액기준	과표기준	
적용	세율적용 이후	세율적용	세율적용 이전	

41) 과표상한제 운영과 관련 시행령은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경제상황 및 지역상황에 맞게 과표상한을 운영할 수 있다.

단계		이후		
전년도 이월	이월	이월	미확정	과표상한 운영방안 미확정

2) 1세대 1주택 특례 등 비교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세액은 일정을 조정해서 한시적 50% 이내에서 경감하고 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기간별, 연령별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통으로 1세대 1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세대합산을 통해서 주택수에 따라 특례를 차등하고 있다.

보유세의 본질은 물적과세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인적합산을 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다주택의 문제를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결국 인적합산에 따른 누적효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물적과세를 인적과세로 전환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시사점

앞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를 부담과 부담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2005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이후 많은 과세보완 제도가 마련되면서 현재와 같이 복잡한 제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유세는 보유세가 갖는 물세의 과세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물세라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양한 인적합산 기능과 납세자별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해서 인세 성격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로 토지 보유세 성격에서 주택 중심의 보유세 성격으로 변화하였다.⁴²⁾

42) 임상빈, 앞의 논문, 194면.

이와 같이 보유세가 주택과세와 인적과세 성격으로 변질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물세라고 하더라도 낮은 부담을 통해서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주택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주택의 가격, 주택의 수, 주택의 보유자의 연령 등 다양한 과세부담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이원화된 보유세의 체계로 세부담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이 걱정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행의 복잡한 보유세 체계를 세계적인 보편적 기준에 맞게 물세 중심으로 재편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재의 이원화된 보유세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III. 미국의 재산세 부담과 부담 제한 제도

1. 미국의 재산세제

가. 개설

우리나라 보유세는 일본의 재산세 체계를 근간으로 발전해 왔다. 비교법적 분석을 하게 되면, 일본의 재산세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산세가 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되고,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재산세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⁴³⁾ 이를 통해서 보편적인 물적 과세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물적 과세에 다른 담세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43) 미국의 재산세는 주마다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비교해 본다.

나. 재산과세 체계

1) 일반재산세

미국 재산세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state and local government)에서 관리한다. 따라서 어떤 주, 어떤 카운티, 어떤 도시인지에 따라 세율과 감면 기준 등이 다르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재산세 계산 방법이나 기준에 있어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주택가격의 1.1 -1.3%를 재산세 명목으로 과세한다. 1%는 일반재산세로 과세하고 나머지 0.1-0.3%는 투표된 부채승인 항목(Voted Indebtedness)이나 직접평가 항목(Direct Assessments)을 합친 것으로 지역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다.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이나 11월초에 발송된다. 1년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첫째 납기는 12월 10일까지이고 둘째 납기는 4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여기서 첫번째 납부는 하반기에 대한 과세이고, 두번째 납부는 상반기에 대한 과세에 해당한다.⁴⁴⁾

2) 특별재산세(Special Assessment Tax)

특별재산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특별회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되어 과세되는 재산세를 말한다. 특별재산세는 재산세 고지서의 항목란에 투표된 부채승인항목이나 직접평가 항목에 표기되어 재산세에 부가되어 과세된다. 이로 인해 재산세 세율은 한도인 1%를 조금 넘는 경우가 있다.

특별재산세의 예로는 멜로루스(Mello-Roos)가 있다.⁴⁵⁾ 이 법에 따르면, 지역 정부가 지역별로 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공공기관 및 설비들을 신설 또는 유지하는데 따른 예산이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

44) 미국의 재산세는 납부금이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세와 유사한 성격이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6월분은 상반기 과세분이고, 12월분은 하반기 과세분에 해당한다.

45) 1978년 제정된 주민발의안 13(Proposition 13)은 재산세 인상을 매년 2%로 한정해 놓았는데 그에 따른 세수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1982년 Mello Roos Community Facilities Act가 통과되었다.

지역(Mello Roos Community Facilities District)을 지정하게 된다. 이후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채권(Bond)을 통해 조달하고, 그 비용을 그 지역 안에 사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이자와 원금을 부담하도록 특별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특별지역에 대해 목적세 성격의 추가 재산세를 부과한다.⁴⁶⁾

3)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금년 1월 1일 이미 산정이 된다. 따라서 집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새 집주인이 집을 산 날짜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내는 재산세는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가 된다. 그러므로 전 소유자가 납부하던 재산세와 새로운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재산의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경우 추가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다.⁴⁷⁾

2. 미국의 재산세부담 제한

가.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3 배경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3은 1978년 발의된 재산세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안이다.⁴⁸⁾ 1970년 후반 재산세의 세부담이 급증하자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46) Mello Roos는 보통 일년 수백불에서 수천불까지 될 수 있으며, 채권이 발행된 시점에서 길게는 30-40년간 부과될 수 있다. Mello Roos는 새로 형성된 신흥 도시 및 마을에 많이 있는 편이다. 재산세 고지서에 “CFD”라는 약자가 표기된다.

47)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ARTICLE 6. Collection of Supplemental Taxes, § 75.5,

48)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3(1978년)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의 종전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은 치솟기 시작했다. 물가상승률을 보정한 로버트 J. 쉘러 지수에 따르면, 1976년 최저가를 기록한 주택지수는 1979년 14% 정도 증가하게 된다. 1974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6% 이상을 기록하고 10%가 넘는 기간도 상당한 상황 탓에, 명목 부동산의 상승률이 매우 높아 부동산가격의 3%에 달하는 재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경기침체로 세금을 내기 어려워진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일으켰고,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3으로 표출되게 된다(<https://ko.wikipedia.org/wiki/1978%EB%85%84>, 2023. 10. 30. 검색).

이 발생했고,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13A조에 재산세 세부담을 재산 가격의 1%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재산세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금으로 환산한 총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1978년 6월 6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Nordlinger 대 Hahn, 505 U.S. 1(1992) 사건으로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합헌으로 확정되었다.

나. 캘리포니아 헌법상 조세부담 제한 규정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헌법에는 조세와 조세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헌법은 조세에 관해 제13조 제1항에서 36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헌법 제13조A 제1항에서 제7항까지 조세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부담을 제한하는 주민발의안 13은 캘리포니아 주헌법 제13조A에 구현되어 있다.

우선,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관련, 캘리포니아 주헌법 제13조A 제1항(a)에서 부동산에 대한 최대 과세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카운티 내에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세율은 1%로 규정하고 있다.⁴⁹⁾

재산세 과표의 상한으로 1976년 가치로 평가하여 재산세를 낮추고 평가 가치의 연간 인상을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제한하여 연간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⁰⁾ (a) 소유권 변경 또는 (b) 신축 완료의 경우를 제외하

49) California Constitution Art. 13A Sec. 1(a) : “The maximum amount of any ad valorem tax on real property shall not exceed One percent (1%) of the full cash value of such property. The one percent (1%) tax to be collected by the counties and apportioned according to law to the districts within the counties.”

50) California Constitution Art. 13A Sec. 2(a) : The “full cash value” means the county assessor’s valuation of real property as shown on the 1975 - 76 tax bill under “full cash value” or, thereafter, the appraised value of real property when purchased, newly constructed, or a change in ownership has occurred after the 1975 assessment. All real property not already assessed up to the 1975 - 76 full cash value may be reassessed to reflect that valuation.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고 새로운 기준 연도 가치의 재평가를 금지한다. 이 규정은 개인 소유이든 회사 소유이든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헌법상 재산세 제한인 1%, 2% 규정은 대표적인 재산세 제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제한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⁵¹⁾

3. 연방소득세의 지방세납부액 등 공제

가. 지방세납부액공제⁵²⁾

미국 연방소득세법은 다양한 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⁵³⁾ 일반적으로, 거래 또는 사업 혹은 영리 활동 영위 중에 특정 주정부, 지방정부, 국제조세에 대해 제한된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⁵⁴⁾ 미국 연방소득세는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지방세납부세액공제(State And Local Income and Property Deduction)라고 한다. 공제 가능한 세액의 범주에는 주, 지방 및 외국의 소득세, 그리고 주 및 지방 소득세를 대신

“newly constructed” does not include real property that is reconstructed after a disaster, as declared by the Governor, where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real property, as reconstructed, is comparable to its fair market value prior to the disaster.

51) 2000년 주민발의안 39는 특별재산세 부과 관련 필요기준을 투표자수의 2/3에서 55%로 낮추는 내용이 있다.

52) 미국은 연방정부체제로 지방정부에서 과세한 사항은 공제하는 제도(State And Local Income and Property Deduction)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공제항목은 본 연구에서 “지방세납부세액 공제”로 번역했다.

53)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17 : Your Federal Income Tax For Individuals, 2022., 2023. 11. 15. 검색.

54)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530 : Tax Information for Homeowners, 2022., 2023. 11. 15. 검색.

한 주 및 지방의 일반 판매세, 주 및 지방 부동산세, 그리고 주 및 지방 개인 재산세가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에 대한 총 공제액은 \$10,000이다. 부부 별도 신고의 경우 \$5,000이다.⁵⁵⁾

나. 거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자 공제

연방소득세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자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Primary Residence)에 한하여, 대출액 \$750,000(개인은 \$375,000)까지에 대한 이자만 공제된다.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⁵⁶⁾ 다만, 우리나라는 지방세 납부에 대한 소득세 공제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기타 다양한 부담완화조치

가. 거주자 면제(Homeowner's Exemption)⁵⁷⁾

미국은 집 소유주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특례가 있다. 자신이 직접 사는 집(Principle Residence)인 경우, 거주자 면제를 신청하면, 주택 산정가를 \$7,000 정도 낮게 평가해 준다. 그 결과 일년에 약 \$70 정도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주택을 구입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몇 주 안에 카운티의 재산평가사무소(County Assessor's Office)에서 거주자 면제신청서를 발송해주며, 거주자 면제를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된다.⁵⁸⁾ 다만, 집을 팔거나, 집을 임대하는 경우, 납세자는 직접 카운티의 재산평가사무소(Assessor's Office)에 통보해야 하며,⁵⁹⁾ 이로써, 거주자 면제(Homeowner's Exemption) 혜택이 중지된

55) 2017년 세법개정으로 공제범위가 설정되었다.

56) 우리나라는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1주택자에 한하여 이자비용을 공제해 주고 있다.

57) https://www.boe.ca.gov/proptaxes/homeowners_exemption.htm, 2023. 11. 10. 검색.

58) 거주자 면제 신청은 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 이와 같이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자 면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실제 거주를 요건으로 하므로 임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실제 거주가 아닌 소유기준 과세혜택을 주고 있어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혜택도 거주를 기준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⁶⁰⁾

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60/90 (Proposition 60/90)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3에 의해 일단 집을 사면 재산세가 1년에 2% 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한 집에서 오래 살았을수록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적게 낸다. 오래 살았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되면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주민발의안 60/90은 이러한 불이익을 막아주고 좀 더 자유로운 주택 매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과된 법률이다.

주민발의안 60은 55세 이상인 경우,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판 집보다 가격이 같거나 낮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경우, 전 집에 대해 내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다. 단, 같은 카운티안에서 이사를 가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⁶¹⁾ 다른 카운티로 이사하는 경우 주민발의안 60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주민발의안 90이다. 즉, 주민발의안 60 혜택을 받던 납세자가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가도 주민발의안 6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주민발의안 90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재산세 부담을 제한하는 규정은 카운티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카운티에서 55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9) 거주자 면제 요건을 결한 경우 12월 10일까지 이를 재산평가사무소(과세관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60) 임상빈, “주택 재산세 기준과 세부담 수준 고찰: 거주 및 사용 기준 과세 차등화를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제8권 제2호, 한국지방세학회, 2021. 8., 91면.

61)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 69.5.

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매월 원천징수 납부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지방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이 제공한 금융기관이 이자비용과 함께 재산세를 매달 징수해서 지방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주택을 최초로 신규 구입하거나 주택의 저당 비중이 80% 수준으로 높은 경우 이자비용과 재산세를 동시에 징수하여, 금융기관이 매월 받은 재산세를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게 한다. 금융기관은 미리 재산세를 징수해서 임시보관하다가 재산세가 부과되면 이를 대신하여 납부하게 된다. 이는 은행이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시사점

앞에서 미국의 재산세 제도를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는 상한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산세 부담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연방소득세에서 재산세 등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주택 재산세의 경우 매월 재산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일시에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넷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공제를 통해서 세부담을 낮추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재산세는 물적 과세의 원칙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한 적정한 재산세 부담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유세와 아래의 표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표 8> 한국과 미국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 제한 비교

구분	미국	한국	비교

		주택 재산세	주택 종합부동산세	
분류	State (카운티세)	지방세 (기초지자체)	국세	한국 : 이원화 미국 : 일원화
성격	물세 (잔여세)	물세+ 인세 (인적합산혜택)	물세+ 인세 (인적합산중과)	한국 : 물세+ 인세 미국 : 물세
재산평가기능	○	X	X	한국 세법상 재산평가 없음
과표상한	2%	5%	-	재산세과표상한 (2024년 시행)
과표적용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43%, 44%, 45%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세부담 상한	1%	5%, 10%, 30%	50%	
상한성격	한도설정	한도이월	한도이월	
상한혜택 이전	가능 (55세이상)	불가능	불가능	
거주년제	\$7,000	X	X	
1세대 1주택특례		1세대1주택 세율특례	한도 80% 장기보유 공제 연령별 공제	
소득세 공제	연방소득세 공제 \$10,000	X	X	

이를 종합해시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주택의 세부담을 제한하는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재산의 평가와 재산세 과세가 일원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재산평가는 국토부가 하고 재산세 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이나, 미국의 경우 과세관청이 재산을 평가하고 과세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갖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인적합산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미국의 재산세는 철저하게 과세물건 기준 물적 재산세 과세체도로 운영하고 있다. 물적과세에 기반하여 재산평가와 과세행정이 간결하게 운영되고 있다.

셋째, 미국은 과표 상한과 세부담 상한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 방식이 우리나라와 달라 취득기준 과표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취득가격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부동산경기 변동에 따른 상한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재산세 과세표준이 분리되어 있고 매년 부동산을 전수 평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일부면제와 매월 원천징수 납부제도를 통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거주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재산세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어 일시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다섯째, 미국의 재산세는 소유권 변동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1기분과 2기분의 재산세 과세가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되어 소유권 변동에 따라 재산세의 부담이 6개월로 한정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기준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방식에 비해서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에 따른 차이가 작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미국 재산세 제도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재산세 체계와는 큰 차이를 보이나, 구성 및 운영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세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납세자의 편의 측면에서 미국의 지방세공제방식과 대출기관 대행납부 방식 등은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IV. 보유세제의 이중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1. 개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 보유세제는 재산세가 물적과세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인적과세 요소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보유세 체계에서는 보유세 부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보유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한 과세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에서 보유세제의 구조적 문제와 납세자의 부담의 집중 문제, 소득세 과세단계에서 재산세납부세액 미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2. 보유세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가. 보유세제의 구조적 문제

우리나라 보유세는 연혁적으로 보면, 부동산정책에 활용되면서 현재와 같은 제도로 발전하였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시장조정정책으로 보유세 제도가 활용되면서 세부담의 담세력 문제가 야기되고, 사회적인 혼란이 유발되었다.

현재와 같은 이원적인 보유세 체계는 증세와 부동산시장 억제에 유용할 수 있으나 공평과세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원적인 세부담과 제한 규정은 최종적인 보유세 부담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동산을 보유한 고령층의 담세력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재산의 평가와 재산세 과세가 분리되어 있어, 재산의 평가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달라지는데 이를 과세관청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이 공시가격을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는 구조에서 공시

가격의 산정오류, 균형성 오류는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의 수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재산세는 재원조달수단으로 기능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 재산세의 부담에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재산세는 재원조달수단으로 자율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나. 보유세 일원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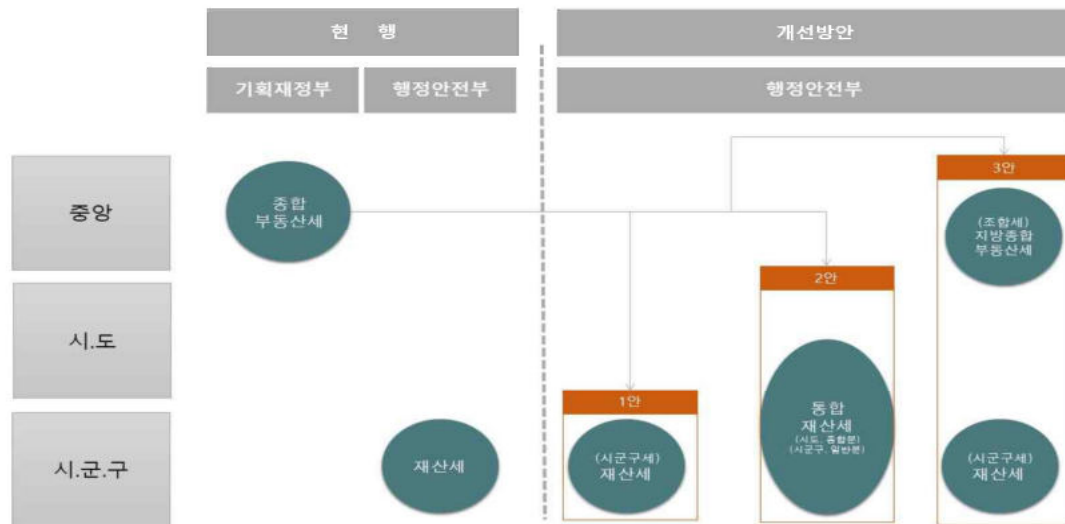
보유세의 이원화된 구조가 현재의 복잡한 체계의 원인이 되고 있어,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보유세 구조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으로 이양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된 징수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에게 민원상담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원화된 구조에 따른 부담과 부담제한, 공제제도 통합을 통해서 보유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보유세 일원화 방안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와 통합하는 방안으로 3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제1안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현행 재산세만 보유세로 남기는 방안이다. 제2안은 연혁적으로 재산세에서 분화되어 나온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재산세에 통합시키는 방안이다. 다만, 종전 종합부동산세의 인적 합산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세분 재산세를 신설하여 이를 재산세(종합분)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제3안은 재산세와 별도로 지방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공동세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⁶²⁾

62) 보유세는 물적과세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보유세 부담제한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유세 일원화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선행연구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그림 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방안



출처 : 임상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이양 방안”, 『정책과제』 2022-1,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6, 67면 인용.

위의 방안 중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우선적으로 형식을 통합하고 개별 물건별 과세방안을 조정하는 점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⁶³⁾

3. 보유세의 부담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

가.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를 보면, 주택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연방소득세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를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제세공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받는다.⁶⁴⁾ 개인사업자도 업무관련 재산의 재산세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있다.⁶⁵⁾ 그러나 개인납

6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상기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6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

65)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16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①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

세자의 경우 주택 재산세 납부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업자와 비사업자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사업자와 비사업자간 형평성 및 거주자의 주거 부담 완화 차원에서 소득과세 단계에서 주택재산세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개선방안

개인납세자의 재산세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제방식을 신설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된 보유세 환경에서 단계별로 세부담상한과 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대상별, 가격별, 연령별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일괄적으로 소득세에서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경우 이러한 이중적 공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납부가 전체 인구의 50% 수준으로 추가 공제를 하게 되면 소득세 납부자가 더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담세력 측면에서는 재산세는 실재가격에 비례하여 납부하되, 소득과세 단계에서 공제하는 것도 담세력을 적정화하는 방안일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적인 선택적 세율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초과부담에 따른 차이를 소득세 세액공제에서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중앙정부의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높은 재산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이는 소득 공제를 통해서 소득세를 줄여주게 되므로 초과부담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득에서 공제하는 담세력을 조정하는 방법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종합부동산세 지방이전의 경우에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는 해당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재산세 기간별 부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가. 문제점

재산세 부담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시점에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집중되는 집중효과 발생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 사례는 재산세 1기분은 상반기, 2기분은 하반기 형태로 과세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하여 과세하되, 7월은 건축물 재산세와 주택재산세(50%), 9월은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재산세(50%)를 납부하게 된다.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7월에 모든 재산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고,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는 9월에 재산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단계에서는 전국에 합산된 종합부동산세를 일시에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유세를 일시에 납부하게 하여 납세자의 납부능력에 한계를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점과세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물적과세를 하게 되면 부담이 크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 합산으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환경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가 집중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정산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적 합산과세를 위해서 특정 일자에 합산을 처리해야 하므로 보유세를 기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나. 개선방안

미국의 재산세는 연 2회 납부하는데, 납부액은 상반기 분과 하반기 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전체 재

산세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과세기준 현재의 소유권자가 아닌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성립일은 복수로 하여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 소유권 변동시 당해년도 재산세를 일할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보유기간별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기분과 관련 기간과 납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세 수시과세 방식과 같이 과세기간과 납기를 규정하고, 과세기준일을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규정하되, 1월 1일 과세기준일에는 현재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7월 1일 과세기준일에는 새롭게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⁶⁶⁾ 구체적인 방안을 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표 9> 과세기준일과 납기 조정방안

기분	기간	납기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소유권 변동시
재산세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년 1월 1일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	매월 변경시 계산후 차액분 고지 소유권 일할 환급 추가
재산세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매년 7월 1일 새로운 공시가격 적용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	정산납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권 변동 등 고려 정산 과세 새로운 세법 적용 차액 과 세

과세관청은 과세기준(1월 1일) 기준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되 7월 이후

66)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는 이유는 공시가격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연단위 과세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에는 새로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기준을 고려하여 정산하여 기간별로 납부액을 부과 및 환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재산세를 정산하면, 일시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소유 기간별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어, 실무상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과 공시과정을 고려할 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연 2회로 구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면,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세분화하고 소유 기간에 따라 과세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부가세 형태로 예상납부세액을 사전에 부과·징수하고, 사후에 정산분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납세자 입장에서 재산세가 일시에 납부하게 되어 납부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 문제를 고려한 제도의 설계가 바람직해 보인다.

5. 납세자 편의를 위한 재산세 월납 및 납부대행

가. 문제점

우리나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납기내에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저당이 있는 주택은 매달 월리금 대출과 예상 재산세가 함께 징수되어, 재산세 납기에 일시에 큰 목돈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재산세 세부담이 높으나 재산세 운영 과정에서 일시에 큰 목돈이 들지 않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산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제한하거나, 납세자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상의 개선

이 필요하다.

나. 개선방안

미국과 같이 매달 금융기관이 징수해서 납기에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의2를 신설하여 금융기관이 재산세를 매달 징수하여 일괄하여 납부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저당이 설정된 경우, 금융기관은 재산세 납부예상을 매월 징수하여 재산세 납부기간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한다. 금융기관은 저당설정시 재산세 납부대행을 신청받은 경우, 이를 과세관청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재산세 납부에 있어 납세관리인으로 보도록 한다. 납부대행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매월 징수한 재산세를 임시보관 계정에 보관하였다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계좌로 입금한 경우 이는 선납 재산세로 세입처리 한다. 선납 재산세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10〉 지방세법 제107조의 2 신설방안

현행	개선방
제107조의2(재산세의 납부대행) <신설>	제107조의2(재산세의 납부대행) ①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저당이 설정된 경우, 금융기관은 재산세 납부예상을 매월 징수하여 재산세 납부기간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저당설정시 재산세 납부대행을 신청받은 경우, 이를 과세관

	청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재산세 납부에 있어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납부대행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매월 징수한 재산세를 임시보관 계정에 보관하였다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계좌로 입금한 경우 이는 선납 재산세로 본다. ④ 선납 재산세 수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V. 결론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보유세의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보유세는 물세와 인세가 혼합되어 보유세 본질에 대한 혼동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어 담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남용되어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유세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기능에 더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유세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보유세 구조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일원화시킬 것인가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납세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서 보유세 과세에 대한 통합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유세 부담의 문제를 앞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과 매월 재산세를 선납하여 재산세 부과에 따른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보유세 문제는 우리나라 재산세제에 만연된 특수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이 갖는 지역성과 부동산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부동산세제는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글로벌 사회에 맞게 보유세 제도도 보유세 본질에 맞는 보편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사회가 글로벌화되고 고령화되는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재산세의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되, 담세력에 맞는 통합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보유세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곽태원·현진권, 「조세론」, 법문사, 2000.,
- 권강웅, 「남기고 싶은 지방세 이야기」, 동양정보문화사, 2002.
- 박민·안경봉,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조세법연구」 제14집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08. 12.
- 이동식, 「일반조세법」(제8판), 준커뮤니케이션즈, 2021.
- 이전오, “조세의 징표로서 담세력”, 「조세논총」 제1권 제1호, 한국조세법학회, 2016. 12.
- 이전오,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헌법 측면을 중심으로”, 「성균관 법학」 제23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12.
- 이준봉, “최근 부동산 세제 등에 관한 비판적 검토”, 「지방세미래포럼(제12회)」 자료집, 한국지방세학회, 2021. 11.
- 임상빈, “주택 재산세 기준과 세부담 수준 고찰 : 거주 및 사용 기준 과세 차등화를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제8권 제2호, 2021. 8.
- 임상빈,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 일원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3. 2.
- 임상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이양 방안”, 「정책과제」 2022-1,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6.
-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발표, 2004. 11. 15.
- 미국 캘리포니아주 홈페이지: <<https://www.boe.ca.gov>>
-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1. 25.
-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530 : Tax Information for Homeowners, 2022.

<Abstract>⁶⁷⁾

**The duality of the estate tax burden limit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 Focusing on the Holdings Tax Burden Limitation
Measure -**

Lim, Sang-Bin*

Korea's wealth tax is divided into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hich has a structural problem of double burden and limitation of wealth tax. There are dual tax subjects, taxable objects, tax authorities, and tax rates, and there are dual fair market value ratios and tax rate caps that limit the burden of the holding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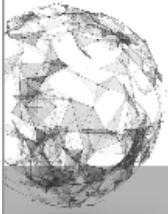
This dual structure of the holding tax has been simplifi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iews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 positive position is tha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constitutes a nationwide combined taxation system for land and housing, which has the effect of discouraging real estate ownership by progressively increasing the holding tax burden on taxpayers with large assets. According to the negative position, the dualization of the property tax limits the ability to set the tax burden according to the taxpayer's ability to pay, and it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y combining only land and housing.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dualized holding tax structure and the structure that limits the tax burden raised by the negative position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examines the need to reform the holding tax system that considers the taxpayer's ability to pay. The Korean capital gains tax system is fundamentally a structure that limits payment when the tax burden increases, and the tax burden fluctuates significantly depending on real estate price fluctuations and

*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Finance ; sbin.lim@kif.re.kr

policy directions. To resolve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o reduce the burden on individual taxpayers by deducting property tax from income tax. In addition, since the wealth tax is a tax on unrealized gains, it may be difficult to pay if the wealth tax is strengthened. To resolve these issues, we also proposed a monthly withholding of property taxes.

The proposal in this study is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caused by the duality of the wealth tax system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through the coordination function in the income tax system and the provision of payment convenience by the financial sector.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globalized and aging society,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improve the integrated wealth tax system in order to moderate the burden level of wealth tax and prepare an integrated taxation system that suits the power.

Key words : holding taxes, property taxes,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Property tax cap, U.S. property taxes, California Proposition 13



제3주제 토론문①

"재산세 부담의 한계와 제한"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윤석환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보유세 부담 제한의 이중성 문제와 개선방안 -보유세 부담 제한 조치를 중심으로-

윤석환(법학박사,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발표자께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일본이 아닌 미국의 재산세 제도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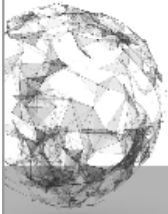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의 특질을 갖는 점이 공통되지만, 물세(物稅)로서의 본질과 인세(人稅)적인 고려가 혼합되어 있어 일반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과세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재산세의 기간별 부담에 따른 개선방안 역시 현재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고, 1년에 단 한 번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5. 31. 잔금을 지급한 매수인과 6. 2. 잔금을 지급한 매수인 사이에 단 1일 전후로 매수한 주택의 재산세를 부담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였을 때 개선의 필요성에도 동감합니다.

다만, 소득세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이에 관하여 발표자의 고전을 구하고자 합니다.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은 수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현금의 흐름을 포착하여 과세한다는 관점과 유사하고, 재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은 자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대한 과세여서 과세의 대상과 취지가 구별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문제는 시장참여자들 주가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투명한 결과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등의 시장가격의 왜곡이

생기자 이를 규제·수정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소득세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은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산세를 기간별 부담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면, 소유권 변동시마다 재산세를 일할 또는 월할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납세 의무자의 특징과 고지 등 징수비용이 과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도 여쭙겠습니다.



제3주제 토론문②

"재산세 부담의 한계와 제한"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김태호 (연구소장, 법무법인 텍스로)

토 론 문

-보유세 부담제한의 이중성 문제와 개선방안-

(김태호 세무학박사)

1. 총평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제는 재정수입이라는 조세고유의 목적보다는 1960년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로 인한 토지수요 급증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과 시대별로 특정사건에 연계된 통화량 증가와 맞물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고, 이러한 망국적이라고 불리었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재산세제는 정책목적이 강한 세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현대적 언어로서 ‘K 재산세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재산세제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국가, 사회적 현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러한 내용은 발표 논문에서 재산세제의 연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1960년대의 재산세, 1987년 토지과다보유세, 1990년의 종합토지세, 2005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형태로 정책세제의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여 발전해 왔습니다.¹⁾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외국의 세제에서 볼 수 없는 강한 정책세제로 발전을 하면서, 조세 본래의 기능과 충돌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도, 과표상한제도, 고령자 세액공제,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1주택 세율특례,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산

1)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이러한 재산세제의 강화뿐만 아니라 사치성재산 중과세,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도 도입하였으며, 이 중에서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위헌으로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세제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표논문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재산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재산세제를 소개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논문에서 제시한 방향들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의 장단점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할 것입니다. 조세제도는 시대적, 공간적,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만든 그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산세제에서 정책기능을 완전히 제거하여 본래의 조세 고유의 재정수입 목적의 재산세제로 탈바꿈시키는 것도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구체적 내용

○ 보유세 일원화

-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2005년 전의 재산세제로 하자는 방향만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세목의 통합방안은 별도의 논문으로 작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 본 논문의 제목인 “보유세 부담제한의 이중성 문제와 개선방안”의 내용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소득세에서 재산세액 공제방안

- 기존의 세부담상한, 종부세 1세대1주택 세액공제 등의 폐지 후 대체방안인지, 아니면 기존의 세액공제제도를 그대로 두고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 기존의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소득세 재산세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재산세 납세자의 경우 세부담증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득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된다고 장점을 서술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수입은 감소하게 되고, 나아가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 기간별 재산세 부과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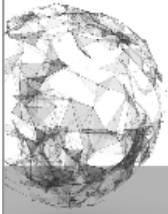
- 발표논문에서는 미국의 재산세제를 소개하면서 과세기준일을 1월 1일과 7월 1일로 2회 정하고, 다시 연중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일할계산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과세기준일 2회 설정, 소유권 변동시 일할계산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과세관청의 세무행정 업무량 증가, 징세비용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도 과세기준일이 2개인 것이 아니라 고지만을 2번으로 나누어서 부과하고, 소유권이 변동되면 일할계산하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과세기준일은 1월 1일이고 납부만 4회 분납하고 일할계산은 없음.

- 즉, 연 2회 납세의무자 확정 및 부과에 따른 자료조사, 부과, 고지서 송달, 독촉업무와 일할계산에 따른 정산 및 부과업무 등 재산세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재산세 금융기관 위탁징수

- 위탁징수 또는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와 과세적 관계에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와 재산세 징수의 관련성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소득지급이라는 관련성이 있고, 위탁징수는 특허업무를 관장하는 특허청, 세관업무를 관장하는 세관장, 컨테이너의 항만출입을 관장하는 항만관리청 등 모두 업무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 미국에서의 주택구입과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연계되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장기 대출금이 있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관리의 연계성이 있고, 금융기관이 대출상환금 및 재산세를 함께 받아서 재산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 대출금융기관에서 재산세 징수대행을 할 경우 별도의 징세비용 지급 문제 발생할 것입니다.
- 또한, 선박, 항공기, 대출이 없는 주택, 토지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직접 재산세를 부과징수해야 하는 등 징수행정이 이원화 되어 복잡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4주제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발표자 이창규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 창 규*

목차

I. 서(序)

II. 인공지능(AI) 기술 적용과 세무업무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

1.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 업무에서의 활용
2.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 업무에서의 적용
3.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세무 프로그램 현황

III.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 분야

1. 세무사 제도의 변천 역사
2.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적용 분야

IV.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의 명암(明暗)

1.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적용시 유용성과 문제점
2. 인공지능(AI) 시대의 세무업무에서의 적용 방향

V. 결(結)

참고문헌

I. 서(序)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이하 ICT)은 그 발전 정도에 따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新기술 중에서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의 발전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미 모바일 기반 번역앱이나 인터넷에서 추천 기능 등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활용 중이다.¹⁾ 이와 함께 세무당국에서는 ICT를 활용한 세무행정의 구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제도 시행으로 세무절차의

* 중앙대학교 연구전담교수(법학박사·기술거래사) / sunrise@cau.ac.kr

1) 딜로이트, 인공지능(AI)이 말을 걸다, 인간과 대화하고 공감하는 AI의 등장, 2023.04, 9면.

온라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3년 2월 2일 보도자료에서 “2023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자료에서는 ICT 활용에 의한 납세자의 편의성의 향상과 과세·징수의 효율화·고도화를 기반으로 스마트 세무 행정으로 진화해 가는 것을 공표하였다.²⁾ 주요 내용은 “디지털 혁신”이라는 역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모바일·인공지능·클라우드 혁신 전략 수립”한다고 공표하였다. 특히 ‘AI 세금비서’를 도입해 창업, 신고·납부 등 모든 세무업무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계획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사회의 진화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업무에서도 변화의 요구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세무업무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의 정보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AI 기술의 발전에 의해 혁신을 강요 받고 있는 것은 비단 세무사만이 아니며, 변호사나 법무사 그리고 행정사 등의 전문직군은 자신의 직무를 정립해야 한다. 특히, 조세분야는 개인·기업 등 넓은 분야와 관련이 있으므로 더 대담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서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잘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은 맡기고 세무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진 세무 전문가는 향후 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수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세무 업무에서 AI 기술의 적용은 한정적이며, 장래 세무업무에 고도화된 AI 기술이 적용 될 때 어떤 유용성과 문제점이 발생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³⁾ 세무업무에 대해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납세자-세무사-세무행정 각각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현 단계에서 AI의 도입에 의해 변화하게 되는 세무업무에 대한 영향과 미래 AI 기술의 도입에 따른 납세자-세무사-세무행정 각각에 있어서의 연계되는 효익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세무사와 세무사 제도가 어떻게 정보화 사회의 진화에 대응해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를 AI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

2) 국세청,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5면.

3) 박 훈, “4차산업혁명을 고려한 세정 및 세제의 개선방안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조세와 법」 제13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03면.

개해 나가고 싶다. 우선 세무사 제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기존의 세무사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와 국민의 편리성에 기여해 왔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후 법률에서 규정된 세무업무에 AI 기술이 적용된 경우의 영향과 미래 세무업무에 AI 기술이 적용된 경우의 효익과 문제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인공지능(AI) 기술 적용과 세무업무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

1.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 업무에서의 활용

AI 프로그램은 세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다. 청구 데이터와 계좌 정보를 합친 입금 확인이나 분개 등은 AI에 의해 자동화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은행 계좌나 업무계 소프트웨어 등과 데이터 연계한다면,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전표의 입력이나 분개 등, 회계 업무 중에서도 시간이 걸리는 단순한 작업을 AI 프로그램에게 맡길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회계사무소에서는 매년 12월~3월에 업무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업무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다. AI의 활용을 통해 입력 등 단순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무사나 세무법인 직원들에게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 가령,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나 회계·세무의 관점에서 경영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다. 이 같이 업무량이 줄어들게 되면 삶의 균형과 경력 개발을 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⁴⁾

AI의 이러한 강점은 클라우드형 회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⁵⁾ 세무사의 업무 중 세무신고서 작성을 위한 간단한 사무처리나 기장대리업무의 대부분은 AI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클라우드형 회계 소프트웨어에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의 이용 명세서의 자동 캡처와 자동 저널 기능이 표준으로 탑재되어, 정리 업무를 줄이는 것에 기여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업무처리나 기장대리 업무에 대해서는 AI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빅데이터(bigdata)나 IoT 기술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 도입·확산의 저해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21, 6면.

5) 이는 소위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as-a-Service : SaaS)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기본 IT 인프라 및 플랫폼을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에게는 SaaS가 적합한 솔루션으로 활용됨

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재량의 여지가 큰 업무, 예를 들면 법인세에 관한 세무사 업무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 외에 회계학, 민법, 회사법 등 다양한 지식에 근거한 전문적인 해석 및 판단이 필요하다. AI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므로 세무업무의 대부분이 AI로 대체될 것이며, AI에 의해 서류 작성 업무 등의 효율화가 진행됨으로써,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조언 및 지도 등을 실시하는 컨설팅 업무로 전환될 것이다. 다시 말해 AI 기술의 구현으로 세무업무의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전문가는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⁶⁾

AI는 인간이나 동물이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과정과 같은 순서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학습하고, 최적의 결과를 인간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가령, 미국의 법률사무소에서 AI를 도입한 결과, 판례를 찾는 작업으로 중견 변호사 6,000 명분의 일을 했다는 보도자료가 있다.⁷⁾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은 컴퓨터 기능의 특성화된 분야이다.

회계 입력 등의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이미 AI가 활용되고 있지만 특수사항을 고려한 회계 처리에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즉, 하나의 거래로 복수의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차량 계정 및 지불 수수료 계정 등 다양한 과목이 사용되는 자동차 구매 거래가 대표적인 예이다. 상황 판단과 특수사항을 고려하는 것은 기술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든 회계처리를 대신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일은 원만한 의사소통과 창조적인 일이다.⁸⁾

2.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 업무에서의 적용

AI 기술의 진보는 눈부시더라도 모든 것을 인간 대신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I 기술과 직업 간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AI 기술의 특성을 분석

6) 이동기, “[국세칼럼] 인공지능시대, 세무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제신문, 2023년 4월 27일자.

7) Slate, “Would Humans Trust an A.I. Judge? More Easily Than You Think.”, <<https://slate.com/news-and-politics/2023/02/chatgpt-law-humans-trust-ai-judges.html>>

8) RAJI OLUWANIYI, “7 Reasons Why Artificial Intelligence Can’t Replace Humans at Work”, <<https://www.makeuseof.com/reasons-artificial-intelligence-cant-replace-humans/>>

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이 가장 뛰어난 분야는 작업의 효율성 증대에 관한 것으로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일정한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추출 및 해석하는 것이다. 문서·음성·영상을 고속으로 식별하거나 하는 점에서는 AI가 월등히 기능이 뛰어나다. 반대로 AI가 부족한 분야는 소량의 데이터로부터 향후의 전개를 예측하는 것, 창조력이 필요한 일, 복잡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 등이다. 이와 함께 상대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AI의 특성에 기초해 생각해 본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는 일(결산서, 세무 신고서 작성 작업)은 가까운 장래 AI 프로그램을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AI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빠르고 단순한 계산 실수 등도 일어나지 않으며, 각 사업자는 데이터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보고서도 작성해 준다. 한편, 클라이언트로부터 세무 등에 관한 상담을 받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임기응변으로 판단하여 조언이 필요한 컨설팅과 같은 영역은 AI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AI 프로그램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I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분야는 의사 소통과 창조성이 높은 업무이다. 앞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AI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많은 세무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관여하는 업무보다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활용방안을 정립한다면 AI 프로그램에 의한 업무 자동화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경영자와 직접 소통하고, 현재의 분석이나 향후의 방침을 조언하는 것은 현행의 AI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세무전문가가 컨설팅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이에 시스템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을 포함한 IT 전반에 대한 지식을 높여 마케팅까지 다룰 수 있는 기술까지 익히게 된다면 세무업무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기업풍토에서는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세무전문가로서 고객의 상담에 임하는 자세, 상호소통 능력을 높이는 AI가 보급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¹⁰⁾

사회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업종에 AI가 진출할 것이다. 그때 세무전문가는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선택해야 한다. AI의

9) 딜로이트, 앞의 책, 8면.

1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I 시대, 미래의 노동자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 2021, 92면.

강점을 갖는 분야에 대한 업무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화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업무의 폭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선 정해진 형태의 데이터 분석이나 정리, 분개의 입력이나 계정의 등록, 세금 서류의 작성 등은 AI를 사용하면 효율화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AI를 사용한 회계 업무가 일반화되면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강점이 될 것이다.¹¹⁾

3.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세무 프로그램 현황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이 등장했다. 현재 스타트업 통계정보 포털인 더브이씨(The VC)에서 확인되는 회계·세무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은 모두 36곳이다. 가장 많은 것은 사업자의 재무 및 회계관리와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만든 '캐시노트', 지엔터프라이즈의 '비즈냅', 로움아이티의 '세모장부', 모두의회계가 만든 '머니핀' 등은 모두 자영업자들의 재무와 회계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단순히 매출과 비용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내야할 세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재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까지 알려준다. 초창기 이런 서비스는 스크래핑이라고 해서 카드매출 등을 금융기관에서 긁어와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현재는 전자적으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단계에 이르렀다. 거액의 투자를 받고 기술개발과 연구를 계속하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한 결과이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미 시리즈E 단계에 접어든 한국신용데이터는 1,200억 원 가까운 누적 투자액을 기록 중이다.

사업자가 세금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다. 널리 소프트가 만든 '셈(SSEM)'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물론 인건비를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택스비의 '택스비', 엠지경영컨설팅의 '세무야'도 세무신고를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세금지식이 없는 사업자들이 이용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무기로 이용자를 끌어들인다. 세금 환급 분야 스타트업도 늘었다. 지난

11) taxwatch, “[AI와 세금]터치 몇번이면 세금계산·신고…민간에서 AI는 일상”,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3/05/09/0001>>

해 세금환급 붐을 일으켰던 자비스엔빌런즈의 '삼쩜삼'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세금환급에 초점을 뒀다면 해움랩스가 개발한 '더넨세금'은 법인들이 돌려받을 세금에 주목한 서비스다. 이미 사업자의 재무와 회계관리 서비스인 비즈넵을 개발한 지엔터프라이즈도 '비즈넵환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영역을 세금환급까지 확장했다. 스타트업의 세무회계 서비스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대부분 웹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뛰어드는 업체들이 늘고 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이용자 수도 급증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세무회계 서비스앱은 10만 다운로드 정도면 최상위 앱으로 꼽혔지만, 이제는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도 눈에 띈다. 세무관리와 세금신고를 도와주는 앱 중에는 널리소프트의 썸(SSEM)이 100만 다운로드 시대를 열었고, 한국신용데이터의 캐시노트 앱도 5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이들 앱을 사용한 후 고객들이 남긴 평가도 좋은 편이다. 썸은 리뷰 5,000개와 함께 5점 만점 평점에 4.8점을 받고 있고, 캐시노트는 1만 8,000개 넘는 리뷰를 받고도 4.6점의 좋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고객 사용성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세금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앱은 그 평가가 썩 좋지는 않다. 자비스엔빌런즈의 '삼쩜삼'은 100만 다운로드를 넘겨 사용자수는 많지만, 평점 4점을 받는데 그쳤고, 세무통이 개발한 '더환급'은 평점 3.8점으로 평점이 저조한 편이다. 세금환급앱들의 낮은 평점은 최근 세금환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세청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무료인 반면, 세금환급앱에서는 상당 수준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세금환급앱에 남겨진 부정적인 후기들 중 상당수는 수수료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무행정이 납세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반면, 세무회계 스타트업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표 1〉 세무회계서비스 스타트업 현황

구분	회사	제품	서비스	투자유치
회계 관리	한국신용데이터	캐시노트	소상공인 재무·회계관리	시리즈E
	지엔터프라이즈	비즈넵	사업자 재무·회계관리	시리즈B
	로움아이티	세모장부	소상공인 재무 회계관리	시리즈A
	리드넘버	리드넘버	소상공인 재무 회계관리	
	푸드노트서비스	장부대장	배달사업자 장부·재무관리	
	모두의회계	머니핀	사업자 세무회계관리	Pre A

	아이비즈온	세무특공대	AI 경영세무관리	시드
	넘버트랙	OKCEO	AI 기업 재무관리	
	아이씨	아이씨리포트	경영-재무분석	
	더블엑스소프트	크립토타크	가상자산 세금관리	
세금 신고	넬리소프트	SSEM	AI 기반 세금신고	시리즈A
	택스비	TAXBY	AI 기반 사업자 세금신고	Pre A
	엠지경영컨설팅	세무야	AI 기반 세무 자가진단	시드
	자비스앤빌런즈	삼짱삼	개인사업자 세금환급	시리즈C
세금환급	지엔터프라이즈	비즈넵환급	개인.법인세금환급	시리즈B
	헤움랩스	더넌세금	법인 세금환급	시리즈A
세금계산	아티웰스	셀리몬	부동산 세금계산	
세무사추 천	브릿지코드	택슬리	세무사 비교.추천	시리즈A
	세무사를 찾는 사람들	찾아줘세무사	세무사비교추천	
세무콘텐 츠	텍스워치	텍스워치	세무콘텐츠	시드

자료 : 스타트업 투자정보회사 "The VC"

III.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 분야

1. 세무사 제도의 변천 역사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세무사 제도는 근대 이후 국가의 재정이 조세에 크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조세부담의 합리적 배분과 능력부담의 원칙에 따른 소득 재분배의 기능 및 원활한 납세의무이행 등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조세업무가 전문화·복잡해져 감에 따라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왔다. 최초 세무사 제도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재무부 과세당국의 실무자에 의하여 세무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세무대리제도의 실시가 주창된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1961년 재무부 사세국(司稅局)의 입안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제안되어 1961년 9월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

이듬해인 1962년에 등록회원 131명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법인으로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초창기의 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법」에서만 그 직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법이나 세무행정법에 있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 뒤 1969년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녹색신고법인(綠色申告法人)에 대한 조정결산서 작성 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하게 되면서 세무사의 사회적 임무가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¹²⁾

한편 1972년 12월 8일에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자동인정자격의 규제와 국가고시의 강화 및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7년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가 확대되었으며, 1980년 「법인세법」에 있어서도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1994년 12월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1995년부터 소득세를 신고납부제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는 더욱 신장이 되었다. 이처럼 종래의 정부가 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던 납세 제도가 점차 신고납부제도로 변모되면서 세무사의 업무가 신장됨과 더불어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전국 세무사 회원 수는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15,891명이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무사 (稅務士)”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9796>>

며, 개업 회원수는 1만 5,185명이다.¹³⁾

1978년 12월 5일 법률 제3105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세무사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①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③ 공인회계사, ④ 변호사 등이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업무 개시를 위해 당시 재무부에 비치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였다.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09호로 일부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이 사라졌다.

세무사가 맡는 주요 업무는 세무기장(稅務記帳)·신고대리(申告代理)·세무서류작성·세무상담 및 심판청구 등의 세무관련업무와 결산업무, 원장기장(元帳記帳) 및 결산표의 작성, 회계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의 회계관계업무, 그 밖에 경영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이다. 한편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장부비치의 의무 등을 지고 있다. 또한 세무사는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 이에 가입하여야 한다. 세무사는 1개 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¹⁴⁾

한편 세무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법인의 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도 없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세무사 제도는 그 때의 경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세무사 제도는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지식의 보급 및 국가재정 확보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2.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적용 분야

세무사 직무는 납세자의 세무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세무 관련 법령과

13) 한국세무사회, 개인 및 법인현황,

<https://www.kacpta.or.kr/kacpta_view/kac_search/userStatus_n.asp>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앞의 자료.

세무 실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는 납세자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세무사 업무를 그 업무의 특성별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서의 세무사 업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사 직무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호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호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호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호	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호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대리 업무 중에서 단순한 세금 계산이나 서류 작성은 AI가 쉽게 수행할 수 있다. 가령, 납세자의 회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세금 신고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AI는 납세자의 세무 상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세무사법」 제2조에서의 업무를 중심으로 세무사 업무의 현상과 AI 도입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세무대리

세무대리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불복신청 등을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것이다. 세무대리에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사실의 해명이나 주장·진술 등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¹⁵⁾ 또한, 세무조사 등 AI 프로그램이 세법이나 과거의 판례 등

에서 근거가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해명이나 주장 및 진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AI가 세법이나 판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납세자의 과거의 회계 데이터나 그 외 정보를 처리해,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주장(主張)이나 진술(陳述)이라고 할 수 없다. 세무관공서에 대한 주장이나 진술 등의 상대가 사람이라면,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주장 및 진술 등을 할 수 있는 대화 능력이 AI 프로그램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대화는 일방적인 발언이 아니라 쌍방의 공감 및 이해가 필요하므로, 상대의 인품이나 사고방식 및 사회적인 처지 등으로부터 타이밍이나 말투 등,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AI가 상대에 관한 정보를 순간적으로 처리하여 상대의 공감 및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주장 및 진술 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면 본연의 세무대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세무서류 작성

세무서류의 작성은 신고서 등을 본인의 판단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무사의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크나큰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세무서류의 작성은 어렵지 않지만, 이중에서도 법인세, 소득세의 신고서 등의 작성에 불가결한 재무제표 등의 작성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다. 재무제표의 작성을 한층 더 세세하게 보면 한 개의 거래마다 회계 분개 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성에 있어서는 기업에서 회계 소프트웨어 개발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¹⁵⁾

여기에서는 특히 영수증 등의 정보로부터 하나의 분개를 작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언급할 수 있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한 회계 정보 교환의 고속화나 금융기관 등의 전자적 데이터의 활용에 의한 회계 처리의 간편화가 진행되고 있어, 한 장의 영수증의 정보를 스캐닝 기능을 통해 “날짜·과목·금액·적요·소비세의 과세비과세등”의 판정까지 컴퓨터에 의해 판단시키는 기술까지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15) 김미옥 외, “지방세 세무대리 업무 인식에 관한 연구”, 『稅務와 會計 研究』 第9卷 第4號, 한국세무사회, 2020, 401면.

16)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 <https://nts.go.kr/tax_inquiry/guide_01.html>

이는 음식점 이름이라면 회의비 등의 지출로, 특정 기업 등에서 입금이 있다면 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RPA) 방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¹⁷⁾

하지만 이러한 자동화 기능에 의한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는 여전히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하나의 거래에 대해 계정 과목을 자동판정하는 업무에 대해 RPA나 AI에 의한 업무 처리는 가까운 미래에 정교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지도학습에 의한 다수의 패턴의 영수증 등의 정보를 인식해, 오류를 확인하는 것을 반복해 AI의 효율적 기능인 과거의 재무제표 등 정보나 분개 패턴, 법령,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한 납세자의 행동 이력 등의 개인정보 등이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기능개선을 이룩해 이후 납세자에게 올바른 회계 처리, 신고서 등의 작성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 같은 납세자로 동일한 영수증 등의 정보로부터 계상되는 하나의 분개에는 반드시 동일한 분개가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의 업무에서 하나의 영수증 등에 대해 납세자에게 질문이나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정과목의 선정이나 경비 등의 가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세무사로서의 경험칙, 혹은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 납세자에 대해 질의 등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간과 AI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세무상담

세무상담은 세무관공서에 대한 신고 등 주장이나 진술에 관하여 해당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의 상담에 응하는 것이다. 상담에 응한다는 표현은 추적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무보다 대화에 의해 얻어진 정보로부터 회답을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질문에 대답하는 기능으로는 삼성의 빅스비(Bixby), 애플사의 음성인식 어시스턴트 기능의 시리(Siri) 등이 있다. 이러한 음성인식 어시스턴트는 상담자의 질문에 대해 기계에 내재하는 시스템을 호출하는 기능이나 인터넷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의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오늘날에는 질문 내용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채팅봇 기능을 이용한다면, 어떠한 질문에 대해 확일

17) 이동기, 앞의 자료.

적인 대답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¹⁸⁾

그러나 세무상담은 빅데이터 처리기술보다 대화에서 얻은 정보로부터 어떻게 대답하는지 고도의 대화기술이 요구되므로 AI가 인간과 같은 소통을 통해, AI의 응답을 세무사나 세무관공서의 답변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 세무상담에 한정하지 않고 이미 기술한 세무대리나 세무신고서의 작성 업무를 실시하는 AI가 만약, 세무 판단의 실수나 위반을 범했을 경우 또는 납세자의 의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책임을 부담을 AI를 개발한 민간기업이 부담하는지와 프로그램을 사용한 납세자에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IV.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의 명암(明暗)

1.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적용시 유용성과 문제점

(1) 인공지능(AI)가 제공하는 세무업무의 유형

1)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형

앞서 언급한 「세무사법」에 규정된 아홉 개의 업무 영역을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크게 세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보 처리의 성질이 강한 업무(정보 처리 업무)이다. 세무서류의 작성과 부수업무 중 재무서류의 작성, 회계장부의 기장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업무는 정형성이 높은 것이며, 인간보다 AI가 자랑하는 분야로 해당 업무를 AI가 행한 경우에 적절한 데이터에 근거해 처리되는 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납세자 또는 행정과의 의사 소통을 필요로 하는 업무(대화형 업무)이다. 세무대리 중 세무조사 입회나 불복신청 대행과 세무상담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업무는 정형성이 낮고,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현재의 AI 기술이 이러한 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해당 업무를 AI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AI마다 다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계 학습이나 AI에 사용되는 빅

1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 튜터 서비스 현황 및 추진과제」, 2022.11, 15면.

데이터나 자동정보 처리순서에 편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공 주체별 유형

앞서 AI 기술이 적용이 가능한 세무사의 업무를 그 특성별로 유형화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편의의 제공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첫째, 세무사가 제공하는 경우이다. 세무사가 AI 기술 기반 프로그램을 오퍼레이터(Operator)로 이용하고 그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AI를 이용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세무사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현행 세무사로부터 제공받는 업무와 차이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세무당국인 국세청이 제공하는 경우이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리성의 향상이나 과세·징수의 효율화·고도화를 위해서 납세자용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 서비스는 세무사와 계약하지 않는 납세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납세자가 자기의 책임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기업은 기존 회계 소프트웨어 및 세무신고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세무업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고, 납세자가 해당 AI 프로그램을 본인의 책임에 근거해 이용하는 경우이다. 세무사와 계약하지 않는 납세자가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납세자는 이용료를 기업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2)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의 적용과 문제점

1) 세무사가 활용할 경우의 효익과 문제점

납세자는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형성이 높은 업무를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¹⁹⁾ 그리고 세무 상담은 AI가 도출한 결론에 대해 최종적으로 세무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므로, 납세자는 스스로가 AI를 이용하는 것 보다 신뢰성을 드높일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스스로가 AI를 이용하는 경우, AI가 업무 처리를 위한 데이터를

19) 이동기, 앞의 자료.

제공하는 단계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인 세무사가 세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적절한 운영이 가능하다. 결국, 세무사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²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사는 AI 프로그램이 정형성이 높은 정보 처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단시간에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의 개선에 의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형성이 낮은 세무상담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방대한 과거의 판례 등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보다 정밀도가 높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효율화에 의해 발생한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해 높은 가치의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세무사의 업무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세무행정에서 정형성이 높은 정보 처리 업무를 AI 프로그램이 처리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없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정형성이 낮은 세무 상담 업무 등에 대해 보다 수준 높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종국적으로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는 AI로부터 편익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하므로 소규모 납세자는 AI에 의한 편익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제공하는 AI 세무지원(AI 세금비서)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편익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는 정형성이 높은 정보 처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세무사 수입이 사라지고 정보 처리 업무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세무사로서의 업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정형성이 낮은 세무상담 업무 등에 관하여 AI가 과거의 판례 등의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도출한 결론을 검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AI 프로그램에 의해 도출된 결론의 근거가 블랙박스화할 가능성이 있다. 세무행정의 원활화라는 관점에서 정형성이 낮은 세무상담 업무 등에 AI가 도입되어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의 과정이 블랙박스화 되었을 경우에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오히려 세무 행정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²¹⁾

20) 정규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세무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전문가의 대응방안”,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40>>

21) 조인성,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적용 가능성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85면.

2) 세무당국이 제공하는 경우의 효익과 문제점

납세자에게 있어서는 정형성이 높은 정보처리업무에 대해, 신고서 작성 등의 세무절차가 간소화 되어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는 납세자의 업무부담 등이 경감될 수 있다. 또한, 세무상담 업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세자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납세자도 정보처리업무나 단순 세무상담업무에 대해 세무당국의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무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²²⁾ 세무사는 확정신고의 무료 상담 업무 등 고객에 대한 업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업무부담이 경감된다. 세무행정의 원활화 관점에서 납세자의 세무절차가 간소화돼 신고서의 정확성 향상과 신고율 향상도 전망된다. 또, 납세자의 데이터를 대규모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져, 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다면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추진해 악질 사건에 대응해 중점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체납 업무에 활용할 경우에 개별 납세자에 대한 납부 능력의 판정이나 체납자 정보와 국내·국외의 재산 정보 등의 자동 매칭 시스템 개발을 통해 압류재산 등의 신속한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납세자의 편리성 향상, 과세·징수의 효율화·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은 납세자 모두가 조세의 의의를 인식하고 적정한 신고와 납세를 실시함으로써 자주적으로 납세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에 기초하자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당국이 의도한 바에 따라 AI에 의해 자동적으로 세무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지므로 신고납세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세무당국에 집약·축적되게 되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납세자의 신용점수를 판단해 의도치 않게 납세자가 프로파일링되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동시에 보다 심도 있고,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²³⁾

게다가 AI 프로그램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 추측하면,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져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무사에게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AI를 이용하여 세무절차나 세무상담을 받는 것으로 업무 과부하가 해소할 수 있을 것

22) 이동기, 앞의 자료.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빅데이터·인공지능 적용을 통한 소청결정자료 활용방안 연구」, 2018, 27면.

이다. 세무행정에서의 문제점은 AI를 이용해 국세청이 세무 판단을 할 경우 AI의 결과값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인간이 추적하지 못하고 블랙박스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국세불복심판소송이나 법원에서의 재결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 내지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이 같은 불명확성으로 인해 세무당국이 소송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I에 의한 세무상담의 자동화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AI에 의한 잘못된 정보의 제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회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시스템이나 납세자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게다가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축적하므로,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데이터 시스템 보안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²⁴⁾

3) 세무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의 효익과 문제점

납세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대한 납세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세무상담 업무도 동일하게 납세자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처리 업무나 단순한 세무상담업무에 대해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같은 수준의 업무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세무 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 수속의 간편화에 의해, 신고의 정확성의 향상이나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대규모·효율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져, 세무 조사에 활용하는 경우, 납세자 마다의 조사 필요성을 정교화해, 악질 사안에 대해 중점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져, 개별의 납세자에 대한 납부 능력의 판정이나, 체납자 정보와 국내·국외의 재산 정보 등의 압류재산 등의 신속한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편리성 향상, 과세·징수의 효율화·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²⁵⁾

다만, 문제점은 AI 프로그램에 의해 도출된 판단 내용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고, 만일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부 본인이 책임부담을 할

24) 최대선, “AI 시대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이슈”, ICT Standard Weekly 제1079호, TTA표준화 위원회, 2022, 3~5면.

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2020, 27면.

수 있다. 만일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을 개발한 기업이 부담할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에 저촉된다는 문제도 있다. 또, 납세자의 개인 데이터를 기업이 수집 및 축적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세무사에게는 납세자가 민간기업의 AI를 이용하여 세무절차나 세무상담을 받는 것으로 업무 과부하가 줄어든 수 있다.

세무행정에서의 문제점은 세무 전문가가 아닌 민간기업에서 개발하는 AI 프로그램에 의해 납세자가 세무 서류의 작성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적정한 세무수속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행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AI 프로그램의 결과값의 도출에 이용되는 빅데이터나 과거의 판례 등의 정보를 습득해 탈루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²⁶⁾

2. 인공지능(AI) 시대의 세무업무에서의 적용 방향

(1) 인공지능(AI)의 업무 범위

미래 세무사의 업무는 그 업무의 특성마다 정보처리 업무와 대화형 업무로 유형할 수 있다. 이에 AI의 세무사 업무 범위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적용범위가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보처리 업무와 대화형 업무라는 유형을 바탕으로 고민해 보기로 한다. AI 기술을 이용한 업무로는 대표적으로 기장대리 업무가 있다. 아직 AI가 처리한 기장 업무는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AI의 기계학습에 의해 그 정밀도는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정밀도가 향상되더라도 사용처가 불명료한 영수증·청구서 등의 확인을 하기 위해 납세자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한다.

또한 현재 AI 프로그램의 결론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블랙박스화 문제'가 있다. 세무상담의 경우 납세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설명책임이 수반된다. 이를 위해서는 설명책임을 부담하는 AI 즉, XAI(EXPLAINABLE AI)인 것이 요구된다. XAI는 현재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AI의 의사결정 과정의 화이트박스로 이어지는 기술이다. 이 XAI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연구 단계이다. 이에 따라 설명책임을 부담

26) 위의 책, 30면.

할 수 없는 AI는 대화형 업무에 대해 아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무사가 세무상담에서 AI를 사용한다면 납세자의 상담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를 AI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AI 시스템이 인간의 두뇌(MI)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인식·판단의 스킬을 획득하고 있는 것(자율형 AI/오토노머스 AI, 그리고 결정 및 권고를 하는 경우에 그러한 과정에 대해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이 요구된다. 따라서 AI가 실시하는 세무사의 업무 범위는 정보처리업무나 대화형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처리업무나 대화형 업무로 활용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따라 AI를 적절하게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2) 인공지능(AI)의 제공 주체

앞서 세무사, 세무당국·기업들이 각자 AI의 제공 주체가 된 경우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렇다면 향후 세무사의 업무에서 어디까지가 AI의 제공 주체가 되어야 할지 가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 기업이 제공 주체가 되면 납세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금 계산은 납세자의 데이터 입력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잡한 세제에서 납세자에게 적절한 납세 금액을 계산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²⁷⁾

세무당국이 제공 주체가 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원래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 신고납세제도는 한편으로 민주주의 이념에 적합하고 다른 의미로는 조세의 능률적 징수 요청에 합치하는 제도이다. 신고납세제도는 헌법 이론적상 국민주권주의의 세법적 표현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유권적 보장기능의 구체적 제도로 볼 수도 있다. 다만, 고정자산세, 개인주민세 등의 지방세는 부과과세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예외적이지만 부과과세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 이상은 그 운용원이 제공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AI 프로그램의 제공 주체는 국세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된다.

만약 국세도 부과과세제도로 한다면 세제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

27) 한국조세연구포럼,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 2008, 42면.

다. 현재의 복잡한 세제는 과세의 공평성이나 경기대책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세제의 간소화에 의해 이러한 내용들이 담보되는지가 의문이다. 또한 세제의 간소화에 의해 세제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납세액 계산에 있어서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납세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납세자에게는 부과과세제도가 되어 세무행정의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장·신고할 수 있게 되면 신고의 수고나 심리적인 불안은 없어진다.²⁸⁾

또한, 세무사가 제공 주체가 되는 경우로서,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자신이 업무효율의 개선에 의해 생산성의 향상이 전망되고, 또한 세무 상담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도가 높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AI의 블랙박스화 문제에 의해 AI에 의지한다고 설명해야 할 결론의 근거가 불명한 채로 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세무사는 납세자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그 대리인으로서 신고업무를 할 수 있다. 신고납세제도가 적정하게 기능하기 위해선 국민이 높은 납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 즉 자발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이 필요하다. 세무사는 신고납세에 의해 그 전문성에 따라 세무판단에 있어서 불명료한 문제에 대해서도 납세자와 대화를 함으로써 적정한 납세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납세제도의 유지나 적정한 신고와 납세의 담보 관점에서 세무사가 AI의 제공주체가 되어 AI를 이용해야 한다.²⁹⁾

V. 결(結)

이미 AI 기술은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개념이지만, 최근 고도화로 발전되어 중요한 사회적 키워드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AI는 미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심화학습의 등장에 의한 AI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사의 업무는 일정 부분이 AI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新기술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업무 효용의 극대화를 추진한

28) Taxtime, “국세청, AI시대 과세인프라 강화에만 초점…납세자 권익보호는 미흡”,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896>>

29) Taxwatch, “[AI와 세금]세무사님, AI가 세무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3/05/18/0001>>

다면, 기존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AI가 사람의 지성을 넘는 소위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이라는 이슈가 있다. 이로 인해 AI와 인간의 입장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이에 세무사의 역할과 바람직한 방향은 「세무사법」을 중심으로 생각해 나가야 할 것이다. AI가 세무사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절차의 간편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편의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해 AI를 이용한 세무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부적합한지와 AI가 도출한 결론에 대한 설명책임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업무 제공 주체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인 법인·개인의 방대한 데이터가 AI에 축적되어 분석·추측에 활용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향후 계속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납세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 편리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고, 개발기업은 기술의 진화를 신고 업무에 반영시켜야 한다. 세무사는 AI의 제공 주체로서 AI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용하면서 납세자에게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 이때 AI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정보처리업무인 세무서류의 작성과 부수업무 중 재무서류의 작성, 회계장부의 기장대리 등의 업무는 줄어들 것이다.

「세무사법」 제1조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 세무사는 신고납세제도가 있는 한 국민에 대해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고 납세자에게 신고나 납세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통해 복잡한 세제에 대응하고, 자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평가가 나뉘어지는 경우에도 적절한 납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무업무 중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세무사의 독점 업무인 세무대리·세무서류의 작성·세무상담 중 세무서류의 작성도 복잡한 세무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에 관해서는 필요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조세에 관한 대리 그 외의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세무사는 시대에 따른 납세자의 요구를 파악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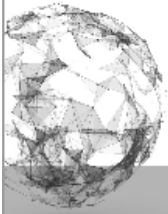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빅데이터·인공지능 적용을 통한 소청결정자료 활용방안 연구」, 2018.
- 국세청,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 2023년 2월 2일자 보도자료
-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 <https://nts.go.kr/tax_inquiry/guide_01.html>
- 김미옥 외, “지방세 세무대리 업무 인식에 관한 연구”, 『稅務와 會計 研究』 第9卷 第4號, 한국세무사회, 2020.
- 딜로이트, 인공지능(AI)이 말을 걸다, 인간과 대화하고 공감하는 AI의 등장, 2023.04.
- 딜로이트, “지능형 IoT : AI의 힘을 사물인터넷과 결합하기”, 『딜로이트 코리아 리뷰』 제10권, 2018.
- 박 훈, “4차산업혁명을 고려한 세정 및 세제의 개선방안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조세와 법』 제13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사물인터넷의 특징과 기반기술 동향”, 2016, <https://spri.kr/posts/view/21307?code=data_all&study_type=industry_trend>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심층학습의 오해와 진실”, <<https://www.spri.kr/posts/view/22502?code=column>>
- 이동기, “[국세칼럼] 인공지능시대, 세무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제신문, 2023년 4월 27일자.
- 장수영외, “심층 강화학습 기술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4권 제4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9.
- 정규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세무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전문가의 대응방안”,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40>>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 도입·확산의 저해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21.
- 조인성,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적용 가능성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조일현, “군집분석 및 커뮤니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직무분석 사례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7권 제1호, 2004.
- 최대선, “AI 시대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이슈”, ICT Standard Weekly 제1079호, TTA표준화 위원회, 2022.
- 최창호 · 유연우, “동일 데이터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회귀분석모형과 구조방정식 모형)”,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4권 제6호, 2016.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 튜터 서비스 현황 및 추진과제」, 2022.1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무사 (稅務士)”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9796>>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ICT, IoT 빅데이터기술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과급효과 및 대응방안연구」, 201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기반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연구」, 2017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융합연구소, 「인공지능」 2019
- 한국조세연구포럼,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 200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2020.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I 시대, 미래의 노동자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 2021.
- 한영근 · 이주연, “융복합 시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동향분석 및 미래방향”,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1,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8.
- MathWorks, “강화학습이란?”,
 <<https://kr.mathworks.com/discovery/reinforcement-learning.html>>
- RAJI OLUWANIYI, “7 Reasons Why Artificial Intelligence Can’t Replace Humans at Work”,
 <<https://www.makeuseof.com/reasons-artificial-intelligence-cant-replace-humans/>>
- Slate, “Would Humans Trust an A.I. Judge? More Easily Than You Think.”,
 <<https://slate.com/news-and-politics/2023/02/chatgpt-law-humans-trust-ai-judges.html>>

Taxtime, “국세청, AI시대 과세인프라 강화에만 초점…납세자 권익보호는 미흡”,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896>>

Taxwatch, “[AI와 세금]“세무사님, AI가 세무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3/05/18/0001>>

taxwatch, “[AI와 세금]터치 몇번이면 세금계산·신고…민간에서 AI는 일상”,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3/05/09/0001>>



제4주제 토론문①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임경인 (세무사, 국민은행)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토론문

임 경 인¹⁾

4차 산업기술혁명으로 대변되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로봇공학, 인공지능 기술 등은 전통산업의 비즈니스 패러다임과 경제·사회 전반을 디지털시대로 전환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²⁾ 그중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AI)의 발전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거래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접근되며,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저장 기간을 무한대로 늘어나게 함으로써 과세행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³⁾

세무업무에서의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상용화는 서비스 이용 주체에 따른 책임 소재 판단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의 선결과제가 존재하며,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하고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소규모 사업자 미리채움 서비스, 챗봇 상담서비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속한 세정지원, 차명계좌 등 금융거래 분석 효율화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AI 세금비서는 단계별(단기·중기·장기)로 일부 세목에 대하여 시범 적용한 뒤 주요 세목에 중점 적용하다가, 대부분의 세목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도입 방향 및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⁴⁾ 그리고 해당 자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조건을 고려하고 세법 등 법률개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구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디지털 혁신’을 역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AI 세금비서’의 시범 적용을 시작하였습니다. AI 세금비서에 대하여 알고리즘에 결함과 오류가 발생해도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문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⁵⁾ 알고리즘 책임성 개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되는데, 하나는 개인의 프라이

1)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세무사, 법학박사

2) 이상근,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과 혁신과 협업을 위한 기업의 인공지능 전략”, 『경상논총』 제41권 제2호, 한독경상학회, 2023, 68면.

3) 정규연, “빅데이터와 AI 발전에 따른 세무행정의 대응 -국세청과 미국 IRS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세무학연구』 제38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21, 42면.

4) 윤창희,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2022년 국세행정포럼 보도참고자료, 6면.

5) 안경봉,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조세금융신문, 2023년 11월 27일자.

버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신러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집 방식, 목적, 사용의도, 알고리즘의 작동방식, 모델링 프로세스나 가중치 등에 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결정거부권 혹은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 능력의 향상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역외탈세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제적인 납세의무를 촉구하기 위해 BEPS 프로그램에 의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여 현재 61개 국가와 국가별보고서 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가 간 정보교환은 ①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 국가의 법이 제공하는 범위까지 정부가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②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업체와 경쟁하는데 돕는 자료로 사용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③정치적 이유로 납세자를 제재하는 데 악용되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④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등의 정보보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⁶⁾

납세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이슈는 AI 기술이나 정보교환과 관련되어 처음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납세자의 거래은행 계좌를 조회하는 금융조사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⁷⁾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개선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일괄조회’가 급증한 기간동안 상속세 세무조사 추정세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조회는 주로 상속세 세무조사에 활용되는 것으로 장기간 축적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일정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정부부과 세목인 상속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조회 건수와 추정세액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는 단순히 과세정보로서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고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는 결과적으로 사생활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①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

6) 정규연, 앞의 논문, 53-5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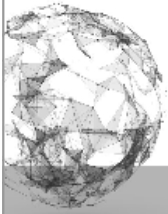
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02893

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사유는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 등 국가행정기관의 필요로만 충족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과세정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정보활용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⁸⁾ 이처럼 AI 기술의 활용으로 과세징수의 효율화·고도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납세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충분합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개인정보를 분석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우려 또한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데이터 시스템 보안을 확립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서는 AI 단계별 데이터 처리기준과 보호조치를 ①AI 모델·서비스 기획 단계, ②데이터 수집 단계, ③데이터 학습 단계, ④AI 서비스 단계로 구분하고 구체화해 나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⁹⁾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상용화를 앞두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하도록 입법되었지만, 과세정보의 수집과 활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세법에서 명문으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안은 없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8) 박훈, “4차산업혁명을 고려한 세정 및 세제의 개선방안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조세와 법』 제13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년, 117-118면.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2023. 8.



제4주제 토론문②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김선명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토론문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선명

이전 한국세무사회에서 2018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세무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전문가의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외부에 의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만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세무사들은 여전히 제 자리에 있다는 생각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우리 세무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제자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고 한국조세법학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발제문에 오류가 있어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세무사 제도의 변천 역사” 내용에 있어 마지막 단락 내용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의 내용은 1999년(시장경제 활성화 및 경쟁 제한하는 제도 폐지를 위함)삭제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세무사연혁과 관련한 내용은 오류가 많기에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세무사회 도서관에 있는 20년사, 30년사 등 세무사 제도 연혁과 관련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의 제공 주체별 유형에 따른 분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세무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형과 제공 주체별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특히나 인공지능 기술의 제공 주체별 유형에 따른 분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인공지능 기술을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유용성과 문제점을 고민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2. 인공지능 기술의 세무업무 적용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지식, 추론,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타산업에서의 활용

▶금융산업(트레이딩, 투자 자문 및 분석), 유통업계(맞춤형 제안, 구매 단순화), 의료계(X-ray, CT, MRI 등의 판독, 진단 및 맞춤형 치료법 제공), 법률계(판례검색)

-세무업무에 활용

현재 세무업무와 관련한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정도의 수준까지 발전되어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발표문에 있는 것과 같이 36곳의 스타트업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관리에서 세금환급, 그리고 납세자가 쉽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나 대부분은 간단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단순반복업무와 같은 정형화된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으며, 복잡한 세무지식을 요하지 않아 소상공인 개인들을 타겟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음.

문제는 자동장부작성이 어떠한 근거로 처리가 되는지 알수 없음(발제자는 ‘블랙박스화’라고 표현하였음), 따라서 정확한 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차후 과세관청에서 소명 요청시 근거자료 확보 어려움.

본인이 직접신고하는 방식이어서 차후 문제가 있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프로그램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예: 삼쩜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8억 5410만 원의 과징금과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음

신고납세제도 아래에서의 납세신고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아래 이루어 져야 하고, 소득과세에 있어서 핵심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증명서류가 비치보관되어 있는 지가 책임인데, 신고서류는 작성되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맡을 수 있는 성실한 납세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추계신고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대신 신고납부하는 AI프로그램은 성실납세에 기여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봄.

3. 인공지능 기술의 제공 주체에 따른 문제점

-세무당국

발표자의 내용외에도 과세당국이 방대한 자료를 수집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서 현재에도 빅브라더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으며 그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임.

또한 국세의 경우 신고납부제도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자료 입력자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이다. 따라서 잘못 입력시 과세당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세무당국에 오류가 있음에도 납세자는 세무당국을 신뢰하여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실례로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모두채움서비스의 경우에도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으

며 납세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채 납부한 사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됨.

세무당국으로서는 영세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도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정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국세행정의 효율 측면에서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징세권자로서 공평과세를 감독하여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임

-세무업무 프로그램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 및 세무사법 위반문제가 상존함 AI의 블랙박스화 문제 상존.

신고 오류시 책임소재 다툼이 예상됨. 또한 실례로 현재 대부분의 세무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 정확한 세법이 적용되지 않아 성실납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대표적인 사례로 일부업체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스크래핑하는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카드경비내역이 세법저 판단 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과다공제되고 있음. 이는 성실납세의무에 위반되며 궁극적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상황이 생김.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카드경비를 납세자가 확인하게끔 되어 있음)

-세무사

발제자의 의견처럼 국세의 현행 신고납부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며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도 세무사가 AI 기술 제공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에 적극 동의함.

이 경우에도 발제자는 AI의 블랙박스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사는 AI가 도출한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닌 그 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기에 그 문제는 해결될수 있을 것임.

4. 세무사가 AI 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앞으로의 과제

- 세무사가 AI 서비스의 제공주체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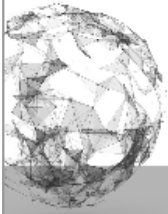
- 세무사에 의해 제공되는 세무정보는 202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90여만명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34만명 중 약 200만명의 복식기장사업자로 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약 28%임

나머지는 국세청에 의해 모두채움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추계신고자 약 382만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책임이므로 보다 정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중간 단계에 있는 “간편장부신고자” 약 216만명이 있는데, 이들은 규모가 커지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납세자로 분류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정확한 세무자료를 근거로 성실납세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더욱 정밀한 생성형

AI 기기의 출현이 기대되기도 한다.

또한 세무업계에서도 이들 간편장부신고자를 성실납세자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AI세무정보 제공자로서 역할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또한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AI에 도입에도 적극적임(국세청 2019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이는 납세자의 편리성 향상, 과세 및 징수의 효율화와 고도화에 있어서 상당한 진척이 있으나 실무진에서 과도한 업무량 문제와 책임성 결여로 민원인과의 마찰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세무사와 국세청의 업무에 있어서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의 논의가 필요함.



부 록

(사)한국조세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사)한국조세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사항을 위임받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훈령 제15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3.)」에 따라 (사)한국조세법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연구자”란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 게재하는 모든 자, 본 학회의 이름으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1. 「조세논총」에 투고된 논문
2. 「조세논총」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3. 「조세논총」에 이미 게재된 논문
4. 기타 (사)한국조세법학회의 명칭으로 간행된 연구결과물

제 2 장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 및 학회의 책임

제 4 조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다른 간행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의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진행 이전에 편집위원회에서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율이 25% 이상인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거부, 수정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또는 소명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 7 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8 조 (학회의 역할과 책임) ①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부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제 9 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표시 순서)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12조 (저자추가 및 변경) ① 논문의 최종저자는 투고단계의 저자 외에 수정단계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저자만 인정된다.

② 논문심사가 종료되어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저자추가 또는 저자변경 및 저자순서 변경은 금지된다.

1. ‘저자추가’란 투고단계에서의 저자 외에 새롭게 저자를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저자변경’이란 저자추가는 없지만 기존저자가 빠지고 새로운 저자로 대체되는 경우, 또는 저자표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교신저자가 수정단계에서 저자추가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편집위원장을 참고로 하여 전체 저자들에게 허락을 득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모든 저자들로부터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④ 교신저자가 공동저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저자추가 및 변경을 하거나, 한사람의 공동저자라도 저자변경 및 저자추가를 거부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저자추가 및 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게재가능 판정 이후 교신저자가 임의로 저자추가 또는 저자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가 취소된다.

제13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4 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 1 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14조 (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변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⑧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15조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절 연구부정행위

제1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16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게재되는 논문 및 연구결과물은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한국조세법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19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제20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거나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21조 (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22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23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24조 (사적 상충 및 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①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 6 장 논문 관리의 공정성

제25조 (편집위원장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장은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7 장 윤리규정 시행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26조 (윤리규정 서약) (사)한국조세법학회의 연구수행과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시 본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27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에 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을 포함해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1조 (연구윤리위원회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3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학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4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②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함)를 둔다.
- ③ 연구자의 소속 기관 등의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고자 학회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의 소속 기관, 대학 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본 학회에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은 본 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전체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를 학회에서 검증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③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39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신고 접수일에서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③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0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 (판정) ① “판정”은 학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학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본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4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 (조사결과의 제출) ①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학회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8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 1. 게재 확정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2.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연구자에 대하여 3년간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논문투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한국조세법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조세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제49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발 행 처 | (사)한국조세법학회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별관 2층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 전 화 | 02) 588-8183

| 홈페이지 | <http://ksti.kr/index.php>

| 편집·인쇄 | 동광문화사 ☎ 02) 503-5165
